

국가전문자격별 동향 분석

2012



한국산업인력공단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 목 차 ••••

I. 시행일정 및 홈페이지 주소

- | | |
|------------------------|---|
| 1. 2012년도 국가전문자격별 시행일정 | 2 |
| 2. 국가전문자격별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3 |

II. 자격별 동향 분석

- | | |
|------------------|----|
| 1. 가맹거래사 | 5 |
| 2. 감정평가사 | 8 |
| 3. 검수사, 검량사, 감정사 | 11 |
| 4. 경매사 | 14 |
| 5. 경비지도사 | 17 |
| 6. 경영·기술지도사 | 20 |
| 7. 공인노무사 | 22 |
| 8. 공인중개사 | 24 |
| 9. 관광종사원(호텔) | 26 |
| 10. 관광통역안내사 | 28 |
| 11. 관세사 | 31 |
| 12. 국내여행안내사 | 34 |
| 13. 농산물품질관리사 | 36 |

| | |
|---------------------|----|
| 14. 문화재수리기능자 | 38 |
| 15. 문화재수리기술자 | 42 |
| 16. 물류관리사 | 47 |
| 17. 박물관 및 미술관 준학예사 | 49 |
| 18. 방사선취급 감독자면허 | 51 |
| 19.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일반면허 | 53 |
| 20.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특수면허 | 55 |
| 21. 변리사 | 57 |
| 22. 사회복지사 1급 | 59 |
| 23. 산업안전(위생)지도사 | 60 |
| 24. 세무사 | 62 |
| 25. 소방시설관리사 | 64 |
| 26. 소방안전교육사 | 68 |
| 27. 정수시설운영관리사 | 72 |
| 28. 주택관리사보 | 74 |
| 29. 청소년상담사 | 77 |
| 30. 청소년지도사 | 79 |
| 31. 한국어교육능력검정 | 82 |

I. 시행일정 및 홈페이지 주소

1 2012년도 국가전문자격별 시행일정

| 회차 | 자격명 | 제1차 월별 수 행일 | 제1차 시행일 | 제1차 합 별 결 자 표 일 | 제2차 월별 수 행일 | 제2차 시행일 | 제2차 합 별 결 자 표 일 | 시행지역 |
|-----|----------------------------------|----------------------|----------------------|-----------------------------------|----------------------|--------------------------------------|-----------------------------------|---|
| 10 | 사회복지사 1급 | '11.12.12 ~12.21 | 2. 5(일) | 3. 14 (최종 3.30) | - | - | - |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강원,경기,전북,제주 |
| 49 | 변리사 | 1. 9~1.18 | 2.26(일) | 4. 4 | 1,2차 동시접수 | 7.21(토)~7.22(일) | 11.14 | 서울,부산,대전 |
| '12 | 청소년상담사 | 1.30~2. 8 | 3.11(일) | 3. 28 | 4. 2~4.6 | 5.13(일) | 5. 23 | 서울,부산,광주,대전 |
| '12 | 경매사 | 2.20~2.29 | 3.25(일) | 4. 18 | 4.30~5.4 | 6.16(토) | 7. 4 | 서울 |
| '12 | 관광통역안내사(국어) | 3. 5~3. 9 | 4. 1(일) | 4. 25 | 1,2차 동시접수 | 6. 2(토)~6. 3(일) | 6. 20 | 서울,부산,제주 |
| | 관광통역안내사(일반) | 8. 6~8.10 | 9.16(일) | 10.10 | 1,2차 동시접수 | 11.3(토)~11.4(일) | 11.21 | 서울,부산,제주 |
| '12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반면허 | 2.27~3. 7 | 4. 8(일) | 5. 2 | - | - | - | 서울,부산,광주,대전 |
| 29 | 관세사 | 2.20~2.24 | 4. 8(일) | 5. 16 | 1,2차 동시접수 | 7. 1(일) | 9. 19 | 서울,부산 |
| 49 | 세무사 | 3.19~3.28 | 4.29(일) | 5. 30 | 1,2차 동시접수· 시행 | 7.29(일) | 10.17 |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
| 11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 3.12~3.21 | 5. 6(일) | 6. 13 | - | - | 7. 11 | 서울,대전 |
| 12 | | 9.17~9.26 | 11.11(일) | 12. 5 | - | - | 12.26 | 서울,대전 |
| 27 | 경영지도사 기술자 | 4.16~4.20 | 5.19(토) | 6. 13 | 7. 9~7.13 | 8.25(토) | 9. 26 | 서울 |
| 9 | 농산물품질관리사 | 4.16~4.20 | 5.27(일) | 6. 27 | 7. 2~7. 6 | 8.19(일) | 9. 19 | 서울,대구,광주,대전,제주 |
| '12 | 경계수량조사사 감정정사 | 5. 7~5.11 | 6. 3(일) | 6. 27 | 1,2차 동시접수 | 7.21(토)~7.22(일) | 8. 1 | 경인,부산 |
| 10 | 가맹거래사 | 5.14~5.18 | 6. 3(일) | 6. 27 | 7. 9~7.13 | 7.29(일) | 9. 12 | 서울 |
| 21 | 공인노무사 | 5. 7~5.16 | 6. 9(토) | 6. 27 | 7. 2~7. 6 | 8. 4(토)~8. 5(일) 10.13(토)~10.14(일) | 9. 26 10. 24 |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서울 |
| 4 | 소방안전교육사 | 5. 7~5.16 | 6.17(일) | 7. 18 | 1,2,3차 동시접수 | 6.17(일) | 9.5(2차) | 서울,대전 |
| | | | | | | 10.6(토)~10.7(일) | 11.14 (3차) | 서울 |
| 2 |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위생지도사 | 5.14~5.18 | 6.23(토) | 7. 25 | 7.30~8. 3 | 9. 1(토) | 10.10 (2차) | 서울,대전 |
| | | | | | | 10.20(토)~10.21(일) | 10.31 (3차) | 서울 |
| 23 | 감정평가사 | 5.14~5.23 | 7. 1(일) | 7. 25 | 1,2차 동시접수 | 9. 9(일) | 12.12 | 서울,부산 |
| 15 | 주택관리사보 | 6. 4~6.13 | 7.15(일) | 8. 8 | 8.27~9. 5 | 9.23(일) | 10.31 | 강릉,포항,부산남부,목포 이외 전 지역 |
| 16 | 물류관리사 | 6. 4~6.13 | 8. 5(일) | 9. 19 | - | - | - |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
| '12 | 청소년지도사 | 7.30~8. 8 | 9.16(일) | 10. 4 | 1,2차 동시접수 | 11.24(토)~11.25(일) | 12.12 | 서울,부산,광주,대전 |
| 7 | 한국어교육능력검정 | 8.20~8.29 | 9.23(일) | 10.24 | - | 11.10(토)~11.11(일) | 12. 5 | 서울,대구,광주,대전 |
| 30 | 문화재수리기술자 | 8.20~8.24 | 10.6(토) | 11.14 | 1,2차 동시접수 | 12. 1(토) | 12.20 | 서울,부산,광주,대전 |
| '12 | 문화재수리기능자 | 8. 6~8.10 | 10.7(일) ~10.15(월) | 11. 7 | - | - | - | 대전 |
| 23 | 공인종개사 | 8.13~8.22 | 10.28(일) | 11.28 | 1,2차 동시접수·시행·발표 | | | 전국 24개 지부/지사 |
| '12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특수면허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 10.8 ~10.12 | 11.4(일) | 11.30 (최종 12.26) | - | - | - | 대전 |
| '12 |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 10.8 ~10.12 | 11.11(일) | 11.28 | 1,2차 동시접수 | 12. 8(토) | 12.20 | 서울 서울 서울 서울,부산,경인,대구,광주, 대전,경기,제주 |
| | 호텔서비스사 국내여행안내사 | | | | | 12. 9(일) | | |
| 14 | 경비지도사 | 10.8 ~10.12 | 11.18(일) | 12.20 | 1,2차 동시접수·시행·발표 | | |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경인,경기,제주 |
| 13 | 박물관및미술관준학예사 | 10.22 ~10.26 | 12. 1(토) | 12.26 | - | - | - | 서울 |

* 소방시설관리사 및 행정사는 2013년 시행 예정

※ 자격별 시행 일정을 SNS(https://twitter.com/HRDKorea_Q_net) 계정을 통해 홍보 예정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국가전문자격별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번호 | 종목명 | 홈페이지 주소 |
|----|----------------|---|
| 1 | 가맹거래사 | http://www.q-net.or.kr/site/gamaeng |
| 2 | 감정사 | http://www.q-net.or.kr/site/gamjeong |
| 3 | 감정평가사 | http://www.q-net.or.kr/site/value |
| 4 | 검량사 | http://www.q-net.or.kr/site/geomryang |
| 5 | 검수사 | http://www.q-net.or.kr/site/geomsu |
| 6 | 경매사 | http://www.q-net.or.kr/site/kyungmae |
| 7 | 경비지도사 | http://www.q-net.or.kr/site/security |
| 8 | 경영지도사 | http://www.q-net.or.kr/site/MC |
| 9 | 공인노무사 | http://www.q-net.or.kr/site/nomu |
| 10 | 공인중개사 | http://www.q-net.or.kr/site/junggae |
| 11 | 관광통역안내사 | http://www.q-net.or.kr/site/interpreter |
| 12 | 관세사 | http://www.q-net.or.kr/site/customs |
| 13 | 국내여행안내사 | http://www.q-net.or.kr/site/tourguide |
| 14 | 기술지도사 | http://www.q-net.or.kr/site/TC |
| 15 | 농산물품질관리사 | http://www.q-net.or.kr/site/nongsanmul |
| 16 | 문화재수리기능자 | http://www.q-net.or.kr/site/surigineung |
| 17 | 문화재수리기술자 | http://www.q-net.or.kr/site/surigisul |
| 18 | 물류관리사 | http://www.q-net.or.kr/site/CPL |
| 19 | 박물관및미술관준학예사 | http://www.q-net.or.kr/site/curator |
| 20 | 방사선취급자감독자면허 | http://www.q-net.or.kr/site/SRI |
| 21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 http://www.q-net.or.kr/site/RI |
| 22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 http://www.q-net.or.kr/site/DRI |
| 23 | 변리사 | http://www.q-net.or.kr/site/patent |
| 24 | 사회복지사1급 | http://www.q-net.or.kr/site/welfare |
| 25 | 산업안전지도사 | http://www.q-net.or.kr/site/indusafe |
| 26 | 산업위생지도사 | http://www.q-net.or.kr/site/indusani |
| 27 | 세무사 | http://www.q-net.or.kr/site/semu |
| 28 | 소방시설관리사 | http://www.q-net.or.kr/site/sbsiseol |
| 29 | 소방안전교육사 | http://www.q-net.or.kr/site/sbanjeon |
| 30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 http://www.q-net.or.kr/site/jeongsoo |
| 31 | 주택관리사보 | http://www.q-net.or.kr/site/housing |
| 32 | 청소년상담사 | http://www.q-net.or.kr/site/sangdamsa |
| 33 | 청소년지도사 | http://www.q-net.or.kr/site/jidosa |
| 34 |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 http://www.q-net.or.kr/site/koreanedu |
| 35 | 호텔경영사 | http://www.q-net.or.kr/site/hotelg |
| 36 | 호텔관리사 | http://www.q-net.or.kr/site/hotelm |
| 37 | 호텔서비스사 | http://www.q-net.or.kr/site/hotels |

II. 자격별 동향 분석

1 가맹거래사

□ 가맹거래사

-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을 수료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국가자격사

(출처 : 대한가맹거래사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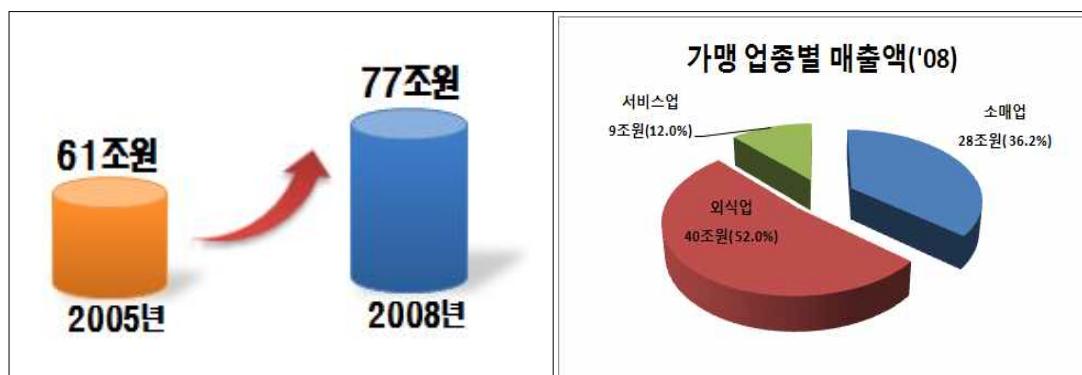
가맹거래사의 역할

가맹사업의 사업성 검토, 가맹사업당사자의 교육·훈련,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 및 수정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분쟁조정 신청대행, 정보공개서 등록신청대행 등 가맹사업 전반에 대한 경영 및 법률서비스를 제공함

□ 가맹사업 현황

- 가맹사업의 매출액 규모는 '05년 61조원에서 '08년 77조원으로 26% 증가하였으며, 선진국에서 매년 10%씩 성장하는 것을 고려할 때 '12년에는 매출액이 100조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가맹사업의 경제적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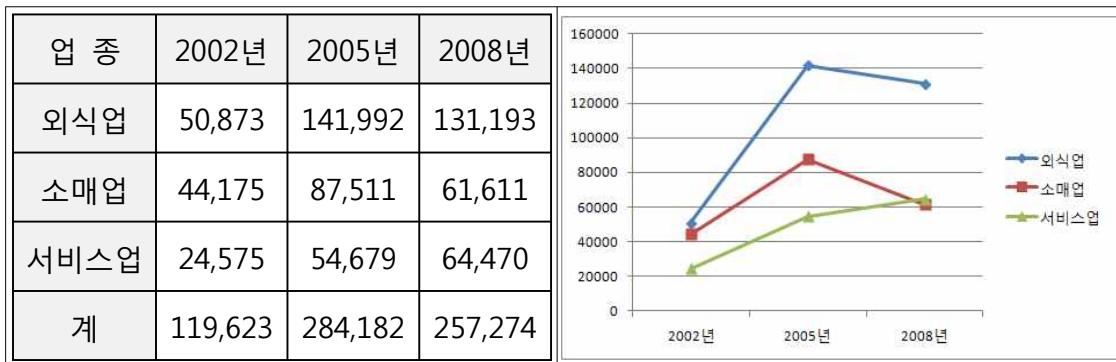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통계자료)

- 국내 가맹사업 가맹점 수는 유행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외식업의 가맹점수가 타 업종에 비해 50% 이상 많음

- 국내의 경우 국민들의 음식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경제 발전에 따른 여성의 사회적 진출 등 맞벌이 가정의 증가, 다양한 먹거리 문화의 빠른 변화가 외식 인구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으로 판단됨

< 국내 가맹사업 가맹점 수 >

(단위 : 개)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통계자료)

□ 취업현황 및 전망(출처 : 대한가맹거래사협회)

- 국내의 경우 가맹사업의 대부분이 외식업 분야에 치중되어 있으나 점차 학원, 약국, 병원, 미용업, 꽃집, 인테리어, 극장 등 다양한 서비스업종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과거와 달리 유통업, IT업종 등 정보통신 분야까지 확산되고 있는 추세임
- 가맹사업은 특히 · 상표 등 지적재산권과 계약법, 부동산, 마케팅, 세무, 노무 등 여러 분야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특수한 분야로서 법률과 혼합된 특성을 가짐
- 공정거래위원회 주관 가맹거래사 자격증은 모든 사업이 가맹화 되어가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므로 매우 유망한 전문자격증으로 인식되고 있음

< 신문기사 >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거래사 영입 본격화

가맹거래법 시행으로 필요인력...자격증수당 50만원 수준

입력 : 2008.01.23 12:00

- 가맹점 1만개 창업시 4만명 고용창출 효과와 약 1.2조원 투자효과 발생으로 가맹사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 특히 일부 가맹사업자의 가맹점주에 대한 정보공개 미흡 및 부정당한 처우로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맹거래사 자격취득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시 되고 있음

□ 응시추이

- 가맹거래사는 공단에서 '03년 제1회부터 시행하였으며, '11년까지 총 2,590명이 응시하여 370명이 합격하였음

< 연도별 가맹거래사 수험인원 및 합격자현황 >

| 구 분 | 제1차시험 | | | 제2차시험 | | |
|----------|-------|-------|-----|-------|-----|-----|
| | 대상 | 응시 | 합격 | 대상 | 응시 | 합격 |
| 계 | 3,933 | 2,590 | 793 | 1061 | 919 | 370 |
| 제1회('03) | 1,194 | 818 | 151 | 147 | 141 | 62 |
| 제2회('04) | 425 | 331 | 149 | 204 | 178 | 52 |
| 제3회('05) | 215 | 159 | 41 | 109 | 92 | 18 |
| 제4회('06) | 129 | 80 | 30 | 52 | 42 | 29 |
| 제5회('07) | 166 | 129 | 44 | 51 | 42 | 31 |
| 제6회('08) | 376 | 234 | 61 | 71 | 63 | 45 |
| 제7회('09) | 471 | 310 | 146 | 153 | 133 | 50 |
| 제8회('10) | 462 | 223 | 97 | 149 | 125 | 28 |
| 제9회('11) | 495 | 306 | 74 | 125 | 103 | 55 |

□ 동향분석 결과

- 대기업이 전문제과점, 커피 전문점 등 가맹사업 시장에 활발히 진출하고 있어 가맹거래사의 업무 영역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가맹사업관련 분쟁에 따른 법률서비스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임
- 따라서 자격취득자의 사회진출이 보다 쉬워질 전망임에 따라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자가 점차 늘어날 전망임

2 감정평가사

□ 감정평가사

-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1989.4.1. 법률 4120호)에 의해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 주요 업무

공시지가의 조사평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한 협의 보상평가,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평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 금융기관 등의 담보평가, 타인의 의뢰에 의한 감정평가 등

< 감정평가제도 도입 취지 >

감정평가제도는 '89.7.1부터 시행(1989년4월1일공포)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된 제도로서 종전의 토지평가제도와 공인감정사제도를 통합 일원화시키기 위함

※ 관련 법률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

□ 취업현황 및 전망

- 급변하는 부동산 환경아래에서 부동산컨설팅 및 특허권, 영업권 등의 특수감정평가, M&A와 관련하여 기업가치 평가 및 기업 실사, 부동산채권 등의 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 이들 시장의 개척은 감정평가업의 전망을 밝게 하며, 감정평가 업무가 더욱 활성화되리라 기대됨.
 - 자격증 취득 후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무소, 감정평가업무를 지도 감독하는 기관, 기업체의 부동산 관련부서, 부동산 컨설팅 쪽으로 진출할 수도 있음
 - 감정평가사의 취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감정평가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구인·구직 시스템 운영 중

□ 감정평가사가 되기 위한 적성과 흥미

- 수치와 통계를 계산하고 적용할 수 있는 수리능력, 공간지각력, 판단 및 의사결정능력을 갖추어야 함.
 - 꼼꼼하고 세밀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유리하며 이해관계에 따라 감정평가의 결과가 좌우되지 않도록 공정성과 신뢰성, 책임감 등과 같은 엄격한 직업의식이 요구됨.
 - 현실형과 탐구형의 흥미를 가진 사람에게 적합하며, 정직, 신뢰, 독립성 등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함.

□ 관련학과

- 경제학과, 고고학과, 도시계획학과, 도시공학과, 법학과, 부동산 학과, 인류학과, 지역학과, 지역개발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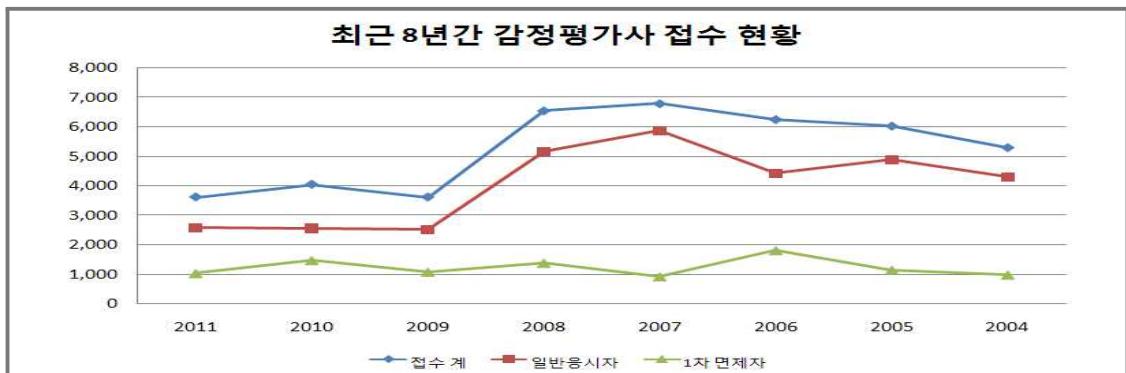
□ 응시추이

- 최근 3년간 접수인원이 '3,600~4,000명선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 최근 8년간 접수인원 >

(단위 : 명)

| 연도별 | 2011 | 2010 | 2009 | 2008 | 2007 | 2006 | 2005 | 2004 |
|--------|-------|-------|-------|-------|-------|-------|-------|-------|
| 접수 계 | 3,622 | 4,053 | 3,618 | 6,557 | 6,800 | 6,260 | 6,039 | 5,302 |
| 일반응시자 | 2,589 | 2,570 | 2,532 | 5,170 | 5,877 | 4,441 | 4,889 | 4,317 |
| 1차 면제자 | 1,033 | 1,483 | 1,086 | 1,387 | 923 | 1,819 | 1,150 | 985 |



< 연도별 합격자 현황 >

| 연도 (회차) | '04 (15회) | '05 (16회) | '06 (17회) | '07 (18회) | '08 (19회) | '09 (20회) | '10 (21회) | '11 (14회) |
|------------|--------------|--------------|--------------|--------------|--------------|--------------|--------------|--------------|
| 합격자수 | 140 | 154 | 181 | 172 | 167 | 203 | 207 | 209 |
| 합격률(%) | 7.4 | 7.4 | 9.0 | 9.8 | 9.2 | 9.7 | 9.97 | 13.09 |

□ 전국 감정평가사 활동 현황

- 한국감정평가협회 등록 인원은 현재 3,253여명(11.4.16 현재)임

< 감정평가사 활동 현황 >

| 구 분 | 계 | 법인 | 한국감정원 | 개인사무소 |
|--------|-------|-------------------|-------|-------|
| 인 원(명) | 3,253 | 2,646 (30개 기관) | 213 | 394 |

* 출처 : 한국감정평가협회

□ 특이사항

- 감정평가사와 회계사가 기업 재무제표상의 부동산 감정평가 업무 영역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음.
 - 그 이유는 '11년부터 기업의 자산을 장부상의 가치가 아닌 국제회계 기준(IFRS)이 모든 상장기업에 적용됨에 따라 관련 법률 개정
 - 회계사의 경우 파생상품, 특허권 등 무형자산 같은 전문적인 영역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고
 - 모든 기업의 자산평가를 감정평가사만이 할 수 있도록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9조(감정평가업자의 업무)

□ 동향분석 결과

- 2009년부터 도입된 최소합격인원제로 인해 합격하기가 매우 어려운 자격으로 인식되어 있으나 합격할 경우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및 FTA체결 등으로 부동산 시장의 사회적 변화가 많아 업무영역 확대 감정평가사 자격자 수요는 증가 예상

3 검수사 · 검량사 · 감정사

□ 검수사 · 검량사 · 감정사

- 검수사, 검량사, 감정사는 수출입화물의 적정성(양, 질등)을 검사하여 증명하는 전문가
 - * 관련법령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 수행직무

-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검수사는 선적화물의 개수 계산, 인도·인수증명 관련 업무를, 검량사는 선적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의 계산, 증명 관련 업무를, 감정사는 선적화물 및 선박에 관련된 증명, 조사 및 감정 관련 업무를 각각 담당하며 항만에서의 수출입 화물 등이 원활히 유통되는데 필수적인 역할 수행

□ 진로 및 전망

- 현재 검수, 검량 전문자격증 소지자는 총 3,489명(검수사 2,340명, 검량사 282명, 감정사 347명, 검량·감정사 520명)이 있으며, 그중 검수사업·검량사업 또는 감정사업 등록업체에서 활동중인 유자격자는 총 2,080명(검수사 1,285명, 검량사 194명, 감정사 193명, 검량·감정사 408명)으로 전국 무역항에서 수출입 화물의 인도·인수 지원활동을 하고 있음

- 검수, 검량, 감정사 종사인원 현황 (단위 : 명)

| 구 분 | 계 | 검수사 | 검량사 | 감정사 | 검량·감정사 |
|-----|-------|-------|-----|-----|--------|
| 계 | 3,489 | 2,340 | 282 | 347 | 520 |
| 종사자 | 2,080 | 1,285 | 194 | 193 | 408 |
| 퇴사자 | 1,409 | 1,055 | 88 | 154 | 112 |

* 자료출처 : 한국검수검정협회 / '12. 12월 말 기준

□ 응시추이

- '07년 이후 검수, 검량, 감정사 수험인원이 소폭 증가 추세임
(단위 : 명)

| 구 분 | | 2008년 | 2009년 | 2010 | 2011 | 비고 |
|------|-----|-------|-------|------|------|-------------|
| 수험인원 | 검수사 | 708 | 523 | 584 | 691 | '12년 미접수 |
| | 검량사 | 154 | 277 | 307 | 330 | |
| | 감정사 | 206 | 322 | 311 | 325 | |
| 합격자 | 검수사 | 227 | 205 | 133 | 240 | |
| | 검량사 | 53 | 96 | 60 | 86 | |
| | 감정사 | 54 | 95 | 82 | 14 | |

- 상기자료는 '08년부터 '11년까지 검수, 검량, 감정사 1차시험 수험인원 및 합격자임

※2009년 국토해양부 항만운송과에서 공단으로 이관되어 시행중임

□ 검수, 검량, 감정 업무의 구분과 범위

- 업무의 구분

| 구분 | 검 수 | 검 량 | 감 정 |
|-----|---|---|---------------------------------------|
| 정 의 | 선적화물을 적하, 양하 하는 경우에 그 화물의 개수의 계산, 인도, 인수 증명 | 선적화물을 적하 또는 양하는 경우 그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의 계산 또는 증명 | 선적화물의 선박에 관련된 증명, 조사 및 감정 |
| 내 용 | 화물상태(손상등) 증명 계수의 계산 및 수도의 증명 | 산화물, 액체, 기체화물의용적 또는 중량검측, 흘수검정 | 선적화물의 적부상태 검사해난, 적하사고시 손해액산정시 참고자료 |

○ 업무의 내역

| 구 분 | 내 역 |
|-------|--|
| 검 수 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입화물이 송하주로부터 수하주에게 인도 되기까지의 선적, 양하, 환적등 모든 화물의 정확한 개수의 계산, 상태의 확인 및 수도의 증명을 행하며, 화물 사고에 따른 선박회사 및 하주의 권리보호를 위한 객관적인 제 3자의 관점에서 공정성과 정확성을 증명하는 공증적 자료로써 검수원에 의해 작성된 “검수표”에 의하여 무역 당사자간의 분쟁 및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구분 증명 하는 업무 |
| 검 량 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간의 합의된 계약에 의한 선적화물중 액체화물, 곡물과 같은 산물, 기체 화물 기타 각종 저장탱크와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을 이해당사자가 아닌 제 3자적 위치에서 공정한 산정과 검측 계산하여 공증적 증명을 발행 ○ 국외적인 분쟁, 손해 등의 발생시에는 외국 의뢰자들은 검량, 감정보고서(Mar- ine Surveyor's Report)를 요청함으로서 제3자의 검량인으로서의 법적 효력을 충족하고 있음 |
| 감 정 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회사, 화주, 보험사 및 기타 제 3자 등의 의뢰로 중립적 위치에서 공정하게 조사, 계산, 확정 및 증명서 발급 ○ 화물, 선박, 운송기기, 해운과 관련된 수량, 용적, 중량, 상태, 품질, 손상 및 손해에 대한 조사, 검사, 사정, 입증 및 증명서 발급 ○ 국외적인 분쟁, 손해 등의 발생시에는 외국의뢰자들은 검량, 감정보고서(Mar- ine Surveyor's Report)를 요청함으로서 제3자의 검정인으로서의 법적 효력을 충족하고 있음. |

□ 동향분석 결과

- 매년 검수, 검량, 감정사 자격시험에 1,000명 내외의 수험자가 응시하여 1차시험 합격률은 평균 38.9%이며 2차시험(구술)은 총 2,535명 대상에 2,517명이 응시하여 99.3%의 응시율을 보이며, 2,254명이 합격하여 합격률은 89.6%를 보이고 있음

※ '03년부터 '11년까지의 수험대상 및 합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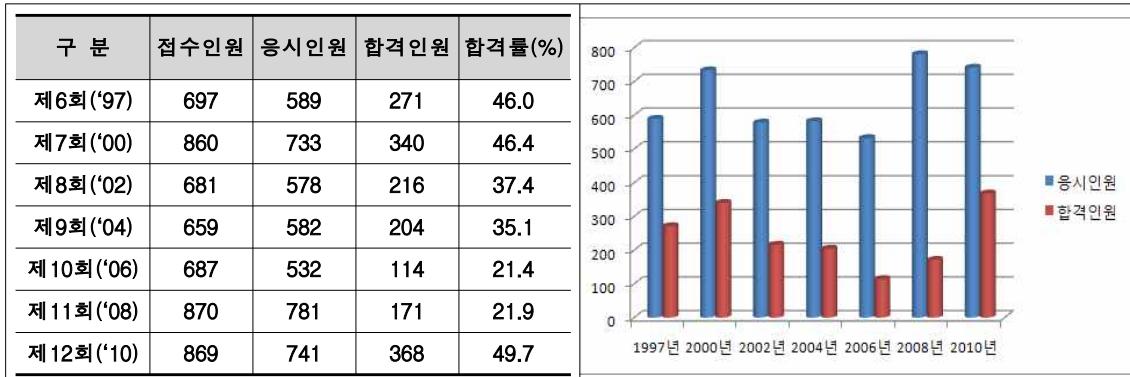
4 경매사

□ 경매사

- 경매사는 도매시장 법인의 임명을 받거나 농수산물공판장·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자의 임명을 받아 상장된 농수산물의 가격평가 및 경락자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함
 - 경매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도 경매사가 되는 것이 아니며, 도매시장 법인, 농수산물공판장·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임명되어야지만 경매사라고 부를 수 있음
- ※ 경매사 임면(任免)시 농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 응시추이

- 경매사 응시인원은 먹거리 인구의 감소와 직거래 활성화 등 유통 구조 변화, FTA 체결국가 확대 등에 따라 장기적으로 점차 감소할 것으로 보임
- ※ 수입 농수산식품류의 경우 수입업자가 유통망을 통한 직접 거래



- 특히 양곡류 등 일부 부류의 거래량 감소로 해당 부류 응시자 수는 줄고 축산물의 가격 급등으로 청과 및 수산물 부류의 거래량은 늘고 있으나 변동폭이 작아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 경매사 자격취득자 및 종사자

- '90 ~ 10년까지의 경매사 시험 결과 및 종사자 현황

(단위 : 명, %)



※ 경매사 자격시험은 '90년부터 격년제로 시행되고 있음

- 시험은 '90-'08까지 농수산물유통공사, '10년부터 공단에서 시행 중이며, 자격증발급은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발급

□ 국내 도매시장현황 및 거래 현황

- 국내 도매시장은 전체 49개 정도로 숫자가 작은 편임
 - 따라서 경매사의 활동 영역이 넓다고 볼 수 없음
- '11년도에는 '10년 보다 거래량이 174천톤 증가한 것은 배추 등 채소 농가의 증가와 높은 축산물 가격에 따른 수산물 수요의 증가로 청과류와 수산물류의 물동량 증가하였으나 큰 변동성은 없다고 볼 수 있음

< 국내 도매시장 현황 >



< 국내 도매시장 거래 현황 >

(단위 : 천톤)

| 구 분 | 청 과 | 수 산 | 축 산 | 양 곡 | 약 용 |
|------|-------|-----|-----|-----|-----|
| ‘06년 | 6,067 | 251 | 75 | 65 | 1 |
| ‘07년 | 6,331 | 249 | 73 | 74 | 0.4 |
| ‘08년 | 6,589 | 241 | 75 | 81 | 0.4 |
| ‘09년 | 6,511 | 278 | 68 | 14 | 0.4 |
| ‘10년 | 6,226 | 287 | 64 | 47 | 0.4 |
| ‘11년 | 6,400 | 320 | - | - | - |

□ 취업현황 및 전망

- 경매사 자격취득자의 26.3%가 활동하고 있고 ‘10. 5월경 도매시장의 경매 비리(경매가 조작, 명의 대여, 허위상장 등)가 발생하여 자격 취득자의 채용이 확대되는 추세임
 - 경매사의 취업 활성화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부 도매시장 통합 홈페이지에 상시 구인·구직 시스템을 구축 운영
 - 최근 청과나 수산물 시장의 확대(‘96년 대비 17~50% 확대)로 경매사의 시장 참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됨

□ 특이사항

- FTA로 외국 농산물의 도입 규모가 확대될 경우 국내 농수산물 가격경쟁력 약화로 농산물 생산 규모 변화 예상

□ 동향분석 결과

- 국가간 자유무역협정인 FTA 체결국가 확대에 따라 경매시장도 급격히 변화될 것으로 판단됨

5 경비지도사

□ 경비지도사



▶ 사회 다변화 및 범죄의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찰력의 보완적 역할을 하기 위해 발생된 민간경비의 경비원, 즉 사람의 신변보호, 국가중요시설의 방호, 시설에 대한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경비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경비업법에 자격제도 도입하여 자격 취득자는 위 경비원을 지도, 감독

□ 경비지도사의 종류

- (일반경비지도사)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국가중요시설의 방호 등을 담당하는 경비원을 관리, 감독
- (기계경비지도사) 각종 방범용 감지기 등을 이용한 무인경비 기계를 설치하는 경비원을 지도, 감독 및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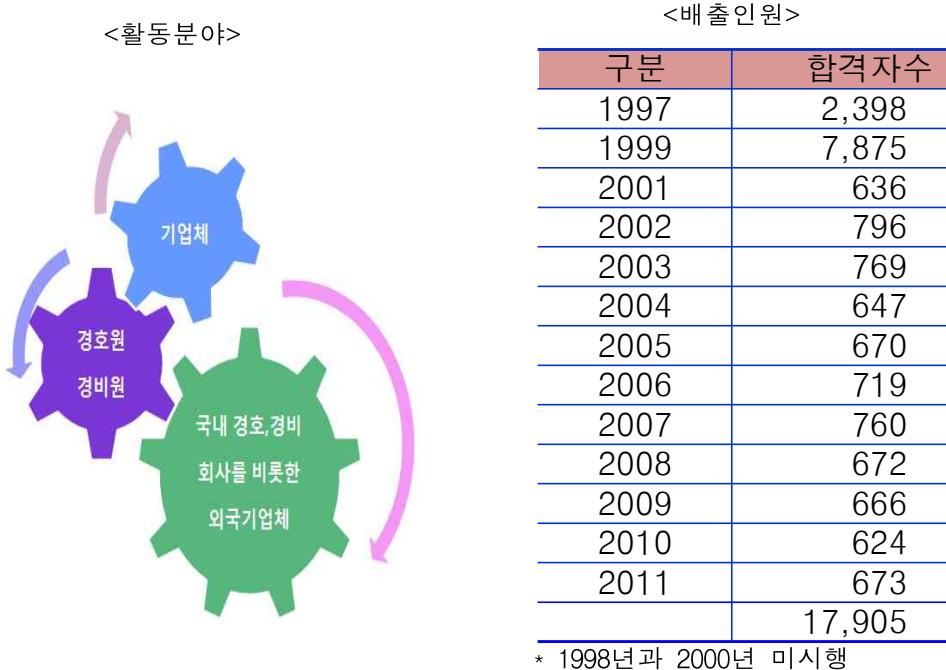
□ 시험일정 안내

- 제14회 경비지도사 시행일정

| 원서접수기간 | 시험일자 <1·2차 동시시행> | 합격자발표 |
|----------------------|---------------------|-----------------|
| 2012.10.8~10.12(5일간) | 2012.9.16(일) | 2012. 12. 20(목) |

- 시행기관 : 서울·부산·대구·경인·대전·경기·제주지부

□ 활동분야 및 배출인원



□ 취업 전망

○ 경호원

- 향후 5년간 경호원의 고용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 우리나라는 경찰 인력 1인당 담당인구가 2009년 기준 507명으로 OECD 최하위 수준이다. 이러한 인력으로 치안 당국이 민생치안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또한, 2010년 자치경찰제의 시행과 2012년 전의경제도의 폐지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생치안이나 질서영역이 점차 민간영역으로 자연스럽게 확대·이양되는 상황으로 이어지면서 이러한 요인은 경호서비스산업의 성장을 이끄는 원인이 될 것으로 보임
- 경찰청에 따른 경호전문업체 허가현황은 2002년 187개소에서 2009년말 기준 489개소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경호전문업체에서 활동하는 경호원의 수도 2002년 1,652명에서 2009년 10,136명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 경비원

- 향후 5년간 경비원의 고용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
- 범죄의 형태가 점차 지능화·첨단화됨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불안감을 느끼거나 경찰 치안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민간경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아파트, 빌라 등의 공동주택이나 대형쇼핑몰, 백화점, 오피스빌딩 등 거의 모든 건물에 경비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특히 공동주택에서 일하는 경비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응시추이

- 1997도에 신설되어 시행 중

(단위 : 명)

| 구 분 | 1997~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
| 수험인원 | 78,913 | 7,761 | 8,643 | 9,211 | 7,633 |

□ 국내의 FTA 체결현황과 자격전망

- 개방물결에 따라 외국기업의 국내진출과 국민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경비지도사의 인력수요는 급격히 늘고 있음.

용역경비업체는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 호황을 누리고 있는 신종사업으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88올림픽을 전후하여 입출국하는 올림픽 관계자의 경호업무로부터 시작하여 지금은 연예인, 유명인사, 재력가 등의 경호를 전담하는 신변보호업체가 전국에 2000여개가 성업중에 있으며 경제발전에 따라서 경제가치가 높은 유가증권, 귀금속, 골동품, 고미술품 등에 대한 도난, 화재, 운반 중의 사고, 기타 위험발생 방지를 전담하는 호송 경비업체가 수십 곳에 이르며 은행, 전당포, 미술전시관, 새마을금고 등의 시설물 전체의 경비를 전담하는 시설경비업체 또한 수십 곳에 이를. 대표적으로는 한국안전시스템, 대한보안공사, 한국보안공사 등을 들 수 있음.

뿐만 아니라 97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경호 경비 용역업체는 의무적으로 경비지도사를 고용토록 하는 '채용의무화'를 실시하고 있어 경비원 200명당 경비지도사는 1명, 경비원 300명당 2명의 경비지도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함.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1년 국가자격요람>

6 경영·기술지도사

□ 경영·기술지도사

- (경영지도사)는 중소기업경영 문제에 대한 종합진단(경영컨설팅)과 기업경영상의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 재무관리 및 회계, 생산, 유통관리, 판매관리 및 수출입업무 등에 대한 진단·지도자문, 상담, 조사, 분석, 평가, 확인, 대행 등 법적기능 수행
- (기술지도사)는 중소기업의 기술 문제에 대한 종합진단(기술컨설팅)과 공장자동화기술 및 공정개선 기술, 공업기반기술, 부품소재 개발, 시제품 등 신기술개발 등에 대한 진단·지도, 자문, 상담, 조사, 분석, 평가, 증명, 대행 등 법적기능을 수행

□ 지도사 분야

- 경영지도사 : 인적자원관리, 재무관리, 생산관리, 마케팅 (4개 분야)
- 기술지도사 : 기계, 금속, 전기·전자, 섬유, 화공, 생산관리, 정보처리, 환경, 생명공학 (9개 분야)

□ 지도사 배출 인원

| 구 분 | 계 | '07이전 | '08년 | '09년 | '10년 | '11년 |
|-------|-------|-------|------|------|------|------|
| 경영지도사 | 4,164 | 3,338 | 176 | 169 | 288 | 193 |
| 기술지도사 | 774 | 703 | 16 | 21 | 15 | 19 |

- 분야별 경영지도사 현황 ('08년 공단시행 이후)

| 구 分 | 합계 | 인적자원관리 | 재무관리 | 생산관리 | 마케팅 |
|-------|--------|--------|-------|-------|-------|
| 인원수 | 826명 | 106명 | 255명 | 95명 | 370명 |
| 비율(%) | 100.0% | 12.8% | 30.8% | 11.5% | 44.8% |

- 분야별 기술지도사 현황 ('08년 공단시행 이후)

| 구 분 | 합계 | 기계 | 금속 | 전기 전자 | 섬유 | 화공 | 생산 관리 | 정보 처리 | 환경 | 생명 공학 |
|--------|-------|------|------|-------|-----|-----|-------|-------|-----|-------|
| 인원수 | 71명 | 11명 | 14명 | 1명 | 6명 | 3명 | 18명 | 15명 | 2명 | 1명 |
| 비율 (%) | 100.0 | 15.5 | 19.7 | 1.4 | 8.5 | 4.2 | 25.4 | 21.1 | 2.8 | 1.4 |

□ 응시추이

- 최근 5년간 지도사 응시인원은 큰 변동폭이 없으며, 일정한 수험 인원이 지속적으로 형성되고 있음

(단위 : 명)

| 구 分 | | 2008 | 2009 | 2010 | 2011 |
|-----------|----------|------|------|-------|-------|
| 경영 지도사 | 수험 인원 | 1차 | 848 | 761 | 892 |
| | | 2차 | 895 | 1,058 | 1,035 |
| | 합격 인원 | 1차 | 90 | 164 | 191 |
| | | 최종 | 176 | 169 | 288 |
| 기술 지도사 | 수험 인원 | 1차 | 81 | 32 | 36 |
| | | 2차 | 143 | 170 | 133 |
| | 합격 인원 | 1차 | 3 | 4 | 1 |
| | | 최종 | 16 | 21 | 15 |
| | | | | | 19 |

□ 취업현황 및 전망

- 지도사는 현재 대략 3천여명이 활동 중이며 자격을 취득하면 컨설팅사무소에서 수습으로 취직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각 지방 중소기업청, 기술지원단, 소상공인 지원센터 등으로부터 지도위원으로 위촉받아 활동할 수 있으며 개인사무소개업도 가능

※ 컨설팅사무소 569개 등록 기술지도사포함

□ 동향분석 결과

- 중소기업 기술의 종합 진단, 지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지도사에게 경영평가 분야를 맡기는 등의 방식으로 명확한 업무 영역 설정과 제도 개선 필요

7 공인노무사

□ 공인노무사

-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을 취득하여 기업의 노무관리에 관한 업무를 맡아 처리하는 전문자격사로서 노동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신청, 보고, 진술, 청구(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노동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모든 서류의 작성 및 확인, 노동관계법령 및 노무관리에 대한 상담·지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등의 직무를 담당

□ 공인노무사 자격배출 인원

(단위 : 명)

| 구 분 | 계 | '85~'05 | '06년 | '07년 | '08년 | '09년 | '10년 | '11년 |
|-------------|-------|---------|------|------|------|------|------|------|
| 계 | 3,392 | 1,860 | 156 | 273 | 241 | 296 | 309 | 258 |
| 시험합격자 | 2,611 | 1,308 | 122 | 229 | 208 | 247 | 253 | 244 |
| 노동행정 경력자 | 781 | 552 | 34 | 44 | 33 | 49 | 56 | 14 |

* 최소합격인원제가 도입되어 2009년 이후 현재 매년 250명을 선발

□ 응시추이

- 최근 몇년간 공인노무사 응시인원 중 1차수험인원은 영어능력검정 시험 성적으로 대체에 따른 감소되었으나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임

(단위 : 명)

| 구 분 | 2008 | 2009 | 2010 | 2011 | |
|------|------|-------|-------|-------|-------|
| 수험인원 | 1차 | 5,262 | 6,346 | 2,902 | 3,275 |
| | 2차 | 1,853 | 2,013 | 2,387 | 2,612 |
| | 3차 | 208 | 250 | 254 | 251 |

□ 취업현황 및 전망

-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은 1987년 제1차 시험이 시작되어 2011년까지 제20차 시험이 시행되었으며, 현재 3,392명이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음
- 현재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하면 대부분 공인노무법인에 취업하고 있으며 개인사무소를 개설하고 있음

□ 동향분석 결과

- 공인노무사는 산업현장에서 기업의 노무관리 자율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전문자격사로서, 한국고용정보원이 미래 주요 유망직종으로 선정('09년)한 바 있으며 노무법인과 기업 등에서 활동하고 있음

8 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는 토지, 건축물 등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수행
- 정부가 부동산중개업자의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취지로, 1983년 제정한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해 처음으로 법률상의 명칭이 생김

* 관계법령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응시추이

- 1985년 제1회 시험을 시작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02년 265,995명을 정점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현재 31만명 정도의 공인중개사 배출되었음.

(단위 : 명)

| 구 분 | 1985~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
| 수험인원 | 2,429,010 | 169,434 | 155,024 | 127,459 | 86,179 |
| 합격자 | 254,342 | 16,117 | 15,906 | 15,073 | 12,675 |

- 공인중개사의 합격자 배출현황

공인중개사 합격자는 1985년~2011년까지 314,113명으로 1985년~1995년은 한해 평균 7,114명 배출하던 것을 1996년부터 2011년까지 한 해 평균 14,740명으로 2배가 늘었음.

- 우리나라 총가구수 15,988,274(2005년)이고 2011년 까지 배출된 중개사 314,113명에 대한 중개사 수와 총가구수를 단순 비교해 보면 50가구당 중개사 1명 꼴임

□ 진로 및 전망

-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후 개인사무소, 합동사무소, 중개법인에 취업하거나 설립할 수 있음
 - 공·경매 참가자격 획득으로 경매에 참여하고 건물의 임대 및 매매로 중개 업무를 할 수 있음
 - 토지나, 건물을 하나의 투자대상으로 인식하여 투자나 매매 재개발 또는 기업체 소유의 부동산도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 컨설턴트 사무실을 개업하거나 취업할 수 있음
 - 기타, 정부투자기관, 일반 기업에 취업/외국인 투자중개법인에 취업 등이 있으며 현재 취업중인 직장인에게는 자격증 수당, 승급 우대 등의 혜택이 부여되기도 함.
-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연령, 성별 관계없이 취업 가능하므로 특별한 기술이나 경험 없이도 자격증과 사무실 보증금만 있다면 누구나 개업가능하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하여 가정부부나 퇴직 후 자영업을 희망하는 장·노년층이 선호하는 자격증이기도 함.
 - 이미 선진국에서는 중개업컨설팅, 분양, 관리신탁 등 전문적인 재산상담가로 활동하고 있고 최근에는 우리나라 역시 선진국형 중개업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추세임

□ 동향분석 결과

- 우리나라 가구수 대비 공인중개사 필요 적정 수는 약2만여명 인데 현재 등록중개업자수 8만5천여명으로(공인중개사 7만4천 여명/중개인 1만1천여명)으로 미 개업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가 24만여명으로 과포화 상태라고 볼 수 있음

9 관광종사원(호텔)

□ 관광종사원(호텔)

- 관광종사원(호텔)자격으로는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가 있음
- 호텔 경영, 객실관리, 서비스관리, 고객 및 접대관리, 음식관리는 투숙객을 위하여 호텔에서 진행하는 모든 서비스를 담당하는 호텔리어

□ 연혁

- (호텔경영사) 총지배인 시험으로 1986년 신설 후 2004년 호텔경영사로 명칭 변경
- (호텔관리사) 1급 지배인 시험이 1970년 신설되고 2급 지배인 시험이 1974년 신설된 이후 2004년 호텔관리사로 통합운영
- (호텔서비스사) 현관·객실·식당접객 종사원 자격증으로 1961년에 신설되어 2004년 호텔서비스사로 통합운영

□ 관광종사원(호텔) 자격의 응시추이

- 응시자격이 있어 매년 응시인원이 비슷하게 형성

(단위 : 명)

| 구 분 | | 2009 | 2010 | 2011 |
|--------|------|------|------|------|
| 호텔경영사 | 수험인원 | 1차 | 4 | 0 |
| | | 2차 | 1 | 0 |
| | 합격자 | 1차 | 1 | 0 |
| | | 최종 | 1 | 0 |
| 호텔관리사 | 수험인원 | 1차 | 7 | 11 |
| | | 2차 | 23 | 6 |
| | 합격자 | 1차 | 2 | 15 |
| | | 최종 | 12 | 8 |
| 호텔서비스사 | 수험인원 | 1차 | 12 | 22 |
| | | 2차 | 7 | 15 |
| | 합격자 | 1차 | 68 | 155 |
| | | 최종 | 56 | 95 |

※ 2009년 공단위탁

□ 취업현황 및 전망 등

- 관광종사원(호텔)자격 제도와 호텔근무의 필수적 연관관계가 없으므로, 호텔리어 숫자에 비하여 자격응시자 및 취득자가 매우 적은 형편임
- 다만, 최근 중국 관광객 증가 등으로 여객시설 부족으로 호텔업계의 확대는 명확할 것으로 보이며 본인의 어학능력과 호텔관련 자격증의 취득은 관련업계 진출을 위한 차별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10 관광통역안내사

□ 관광통역안내사

- 국내를 여행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외국인에게 외국어를 사용하여 관광지 및 관광대상물을 설명하거나 여행을 안내하며, 교통 기관, 숙박시설, 관광객 이용시설 및 편의시설의 이용에 대하여 안내하는 등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자(출처 :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
- 관광통역안내사 제도 연혁



□ 취업현황 및 전망

-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인바운드 여행사(inbound, 외국인의 국내여행 알선 업체 통칭)는 자격증 소지자를 국내여행 가이드로 고용하도록 의무화

관광진흥법 제38조 1항(09.3.25 개정)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 업무에는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가진자가 종사하도록 해당 관광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안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 언어별 12가지 자격종류(영어, 일어, 중국어, 불어, 스페인어 등) 중 대부분은 인력이 포화상태이나 중국어 관광통역안내사의 경우는 최근 몇 년 간 중국인 관광객의 급증으로 인해 수요가 많음

| 국가명 | 미국 | | 일본 | | 중국 | |
|------|---------|--------|-----------|--------|-----------|-------------|
| | 인원(명) | 성장률(%) | 인원(명) | 성장률(%) | 인원(명) | 성장률(%) |
| 2008 | 587,324 | 3.9 | 2,235,963 | 6.4 | 1,068,925 | 9.3 |
| 2009 | 611,327 | 0.2 | 3,053,311 | 28.4 | 1,342,317 | 14.9 |
| 2010 | 652,889 | 6.8 | 3,023,009 | - 1.0 | 1,675,157 | 39.7 |

(출처 : 문화통계포털-문화체육관광부)

□ 응시추이

- 공단 시행(2009년도) 이후 원서접수자(응시자 포함)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 중국인 관광객의 급증에 따른 중국어 관광통역안내사의 부족으로 중국출신 귀화자, 중국동포, 화교 등의 응시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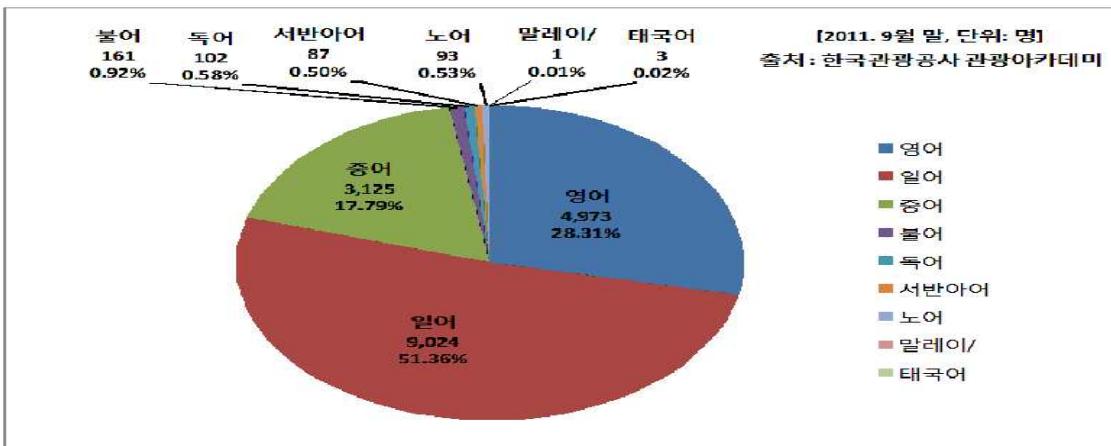
[연도별 전체 언어 대비 중국어 원서접수인원]

(1차시험 기준, 단위 : 명)

| 연도 | 구분 | 접수인원(중국어/전체언어) | 계 | 비율 |
|------|----|----------------|----------------|--------------|
| 2009 | 정기 | 223/1,112 | 223/1,112 | 20.0% |
| 2010 | 특별 | 255/1,188 | 943/3,062 | 30.8% |
| | 정기 | 688/1,874 | | |
| 2011 | 특별 | 823/ 823 | 1,615/2,930 | 55.1% |
| | 정기 | 792/2,107 | | |
| 2012 | 특별 | 2,054/2,102 | 2,054/2,102 이상 | 97.7% |
| | 정기 | 미시행(9월시행) | | |

※ 특별시험 : 주무부처(문화체육관광부)의 요청에 의해 부정기적으로 시행

□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등록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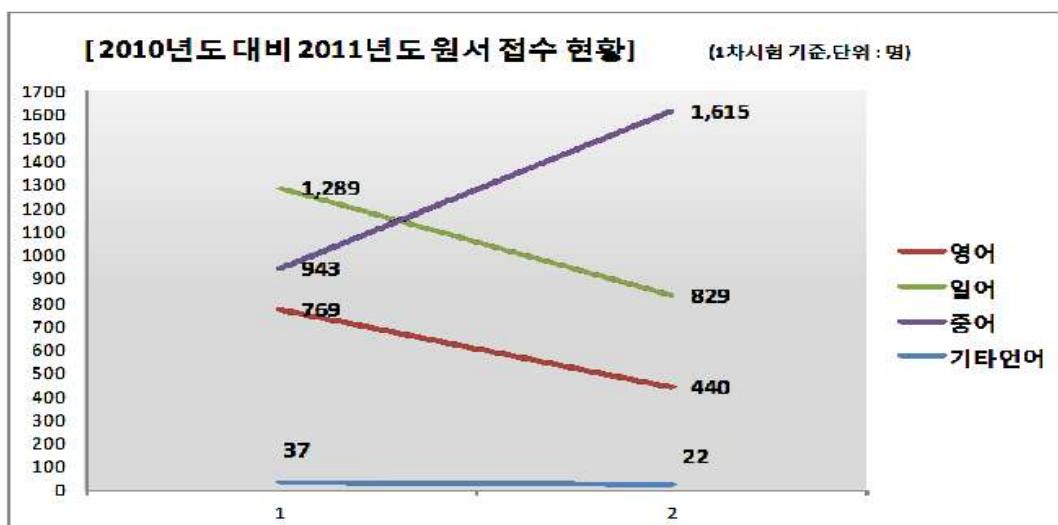
□ 특이사항

- 자격시행의 근거 법령인 관광진흥법 중 관광업 및 관광종사원 관련한 내용을 발췌하여 “여행업법” 신설 추진 중(문화체육관광부)
- 무자격 중국어 가이드의 활동이 최근 언론에 보도되어(MBC 현장 M출동, '12. 1월 방송)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자격취득자 배출 확대 필요
- 자격취득자 공급을 늘리기 위하여 60시간의 실무교육 이수 시, 1차 시험(필기) 중 2과목을 면제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제51조 별표 16, '11.10.6개정)하여 과목 면제자 증가
※ 2011년도(특별+정기) 12.5%(366명/2,930명) → 2012년도(특별) 19.0%(379명/1994명)
※ '12. 2월까지 약 300명의 교육이수자 배출, 2012년도 '8월까지 약 1,200여명의 교육 이수 전망

【출처 : (사)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 동향분석 결과

- 동 자격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정책(무자격자 고용업체 감독, 자격소지자 배출 확대, 적극적인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및 중국인 여행객의 증가로 중국어 원서접수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타 언어의 경우 응시자수가 정체 또는 감소하고 있음



11 관세사

□ 관세사

- 납세자나 통관업자의 위탁으로 관세법과 통관법에 의한 심사청구, 이의신청 등을 대리하는 등 관세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전문자격사
- FTA 등으로 인한 국제무역의 확대로 관세사의 중요성 및 업무영역이 확대되고 있음

□ 관세사 제도 연역 및 현황

- 1975년 관세사 제도 도입 후 격년제로 운영해오다 1995년 이후 관세사법 제정이후 매년시행되고 있으며, 최소합격인원제가 도입
※ 최소합격인원은 2004년 이후 현재까지 매년 75명으로 정례화
- 2011.12. 기준으로 1,029개의 관세법인과 1,419명의 개인관세사가 활동
※ 최근 5년간 관세사 취업률 : 100% (한국관세사회 문의결과)

□ 응시추이

- 최근 5년간 관세사 응시인원은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으며, 향후 업무영역 확장(FTA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임

(단위 : 명)

| 구 분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
| 수험인원 | 1차 | 1,522 | 1,596 | 1,766 | 1,894 |
| | 2차 | 774 | 672 | 187 | 225 |
| 합격자 | 1차 | 469 | 242 | 439 | 436 |
| | 최종 | 75 | 86 | 75 | 75 |

□ 취업현황 및 전망

- 현재는 관세사 자격을 취득하면 대부분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합동관세사사무소에 취업하거나 개인사무소를 개설하고 있음
- 수입은 평균매출이 연간 3억2800만원으로 매우 높은 편에 속함

| 구 분 | 관세사 |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
|-----|----------|----------|----------|----------|
| 연매출 | 3억2800만원 | 3억9300만원 | 2억8300만원 | 2억4400만원 |

(출처 : 2011년도 국세청 조사결과)

- 한-미, 한-유럽 FTA 등의 체결·발효로 관세사의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

※ 불임자료(FTA와 관세사의 업무확대) 참고

동향분석 결과

- 최근 수년간 관세사 자격소지자 100% 취업되고 있으며, 소득수준도 매우 높게 파악됨
- 타 전문자격사에 비하여 적은 합격인원과 FTA 확대 등으로 관세사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관세법인이나 관세사 사무소 위주에서 대기업, 로펌 등으로 취업처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불 입】

자유무역협정과 관세사의 업무영역 확대

□ 국내의 FTA 체결현황과 산업전망

- 우리나라는 현재 대한민국-칠레 FTA 이후 대한민국-미합중국 간 FTA 체결로 8개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어 체결국에 대한 교역량이 대폭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될 전망임
- 교역량이 증가하여 무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교역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증명'이 필수적이며 이외에도 HS코드(국제통일상품 체계)에 따라 총괄적으로 무역거래상품을 분류)를 해석하고 판단하여야만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통관관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관세사의 업무영역 확대

- 자유무역협정으로 관세가 없어지면 관세사의 업무도 없어지는 것이라 생각하기 쉬우나, 오히려 자유무역협정 마다 복잡하고 다양한 원산지 규정과 관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어 관세사의 업무 증가가 확실시 됨
- 최근 관세사의 업무영역은 전통 통관관련업무(HS코드 분류 및 원산지 표시증명)에서 국내기업의 경영컨설팅으로 확대되고 있음
 - FTA 체결국 가운데 어디에 공장을 이전하고 수출하는 게 가장 유리한지 최적의 원가절감 모델 제시
 - 원산지 증명 서류작업에 별도의 직원을 배치하기 어려운 중소 기업의 통관관련 업무대행 및 컨설팅 증가
- FTA에서 원산지 증명에 대한 검증과 불복 등 분쟁상황의 발생이 잦을 것으로 보이므로 관세사의 로펌진출 및 관세법률 상담 증가

12 국내여행안내사

□ 국내여행안내사

-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일정 계획, 여행비용 산출, 숙박시설 예약, 명승지나 고적지 안내 및 소개 등 여행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자격사
 - 국내여행안내원에서 국내여행안내사로 변경(2004년도)

□ 응시추이

- 최근 5년간 국내여행안내사 응시인원은 증가추세에 있음

(단위 : 명)

| 구 분 | 2009 | 2010 | 2011 |
|------|-------|-------|-------|
| 수험인원 | 1,615 | 2,998 | 2,882 |
| 합격자 | 1,391 | 1,150 | 1,264 |

□ 취업현황 및 전망

- 여행사, 호텔 등 관광업계에 진출하거나 프리랜서로 활동
 - 지자체별로 관광객 확보를 위해 각종 행사 등을 개최하고 있어 여행을 실속있게 하기 위해서 국내여행안내원을 찾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질 전망이며, 이 직업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 소득을 올릴 수 있고 합격하기만 하면 특별한 학력 제한이 없다는 데서 전망이 밝은 편임

□ 동향분석 결과

- 최근 주 5일제 근무 및 주 5일제 수업의 확대 시행과 여행객 확보를 통한 세수 확보를 위해 각종 행사(영화제, 나비축제 등)를 추진하는 지자체가 많아지고 있으며, 국민들의 소득 증가에 따른 여가생활 활성화로 국내 여행객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 국내여행 상품 개발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는 관광업계, 유관 단체, 지자체 등과 노력하고 있으며,
 - 특히 상품화가 가능한 제안/ 아이디어 개발을 위한 제안발표회, 제품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범국가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
 - 따라서, 국내여행의 활성화가 가시화 될것이며, 이로인한 국내여행 안내사의 사회적 역할도 향상될 것으로 보임

13 농산물품질관리사

□ 농산물품질관리사

- 효율적인 유통질서 확립과 생산자와 소비자에 대한 홍보 및 농산물 유통개선을 위한 유통정보의 확산 등을 담당
- ※ 응시자격 제한 없음

□ 응시추이

- '08년 위탁 최초시행 이후 수험인원이 대폭 증가

(단위 : 명)

| 구 분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
| 수험인원 | 964 | 487 | 2,046 | 2,230 | |
| 합격자 | 449 | 297 | 437 | 455 | - |

□ 취업 전망

-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취득이후 취업할 수 있는 분야는 농산물을 취급하는 대형 유통업체, 공공기관, 지역농협, 농업직 공무원,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 각종 혜택

1. 농산물을 취급하는 공공기관과 농협 : 인사고과, 수당, 승진등의 혜택
2. 공무원 임용시 관련직종(직렬)일 경우 : 가산점 부여 및 우선채용
3. 지역농협에서 신입직원 채용 : 1차 서류전형에서 가산점 부여

□ 동향분석 결과

- WTO 가입으로 수입 농산물이 수없이 국내시장에 들어오면서 국내산 농산물로 둔갑되고 있는 현실.
- 농산물의 출하 및 유통과정을 보다 엄격히 관리하여 안전하고 품질좋은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공급될수 있도록 유통과정을 보다

엄격히 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를 담당할 농산물품질 관리사의 수요가 증가할것으로 예측됨

- 정부가 농산물품질관리사를 고용하는 산지,소비자,유통시설의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정책차원에서 지원할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있기 때문에 전문자격자로서의 전망은 밝음
※ 법적근거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29조 7항(농산물의 명예감시원)

14 문화재수리기능자

□ 문화재수리기능자

- 문화재수리기술자의 감독 아래 국가지정문화재의 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
- 문화재수리기능자 시험제도는 문화재 수리에 대한 현장실무를 갖춘 전문기능 인력을 배출, 문화재 수리현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부실시공을 방지하여 철저한 문화재 원형보존을 기하고 문화재수리기술자의 감독 하에 문화재 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기능인력을 확보하기 위함

□ 종류 및 담당 업무

○ 종 류

한식목공(대목수·소목수), 한식석공(가공석공·쌓기석공), 화공, 드잡이공, 번와와공, 제작와공, 한식미장공, 철물공, 조각공(목조각공·석조각공), 칠공, 도금공, 표구공, 조경공, 세척공, 보존과학공(훈증공·보존처리공), 식물보호공, 실측설계사보, 박제 및 표존제작공, 모사공(2011년 신설, 2014년 시행), 온돌공(2011년 신설, 2014년 시행)

○ 주요업무

| 종류 | | 업무 범위 |
|----------|-------|---|
| 1. 한식 목공 | 대목수 | 목조 건조물의 해체·조립 및 치목(治木)과 그에 따른 업무 |
| | 소목수 | 목조 건조물의 창호·닫집 등과 이와 유사한 구조물의 제작·설치 및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
| 2. 한식 석공 | 가공 석공 | 석재의 가공과 그에 따른 업무 |
| | 쌓기 석공 | 석조물의 축조·해체 및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
| 3. 화공 | | 단청(불화를 포함한다)과 그에 따른 업무 |
| 4. 드잡이공 | | 드잡이(기울거나 내려앉은 구조물을 해체하지 않고 도구 등을 이용하여 |

| | | |
|-------------------|-----------|--|
| | | 바로 잡는 일을 말한다)와 그에 따른 업무 |
| 5. 번와(翻瓦)와공 | | 기와의 해체 및 번와와 그에 따른 업무 |
| 6. 제작와공 | | 기와 · 전(埴) 등의 제작과 그에 따른 업무 |
| 7. 한식미장공 | | 미장과 그에 따른 업무 |
| 8. 철물공 | | 철물 등의 제작 및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
| 9. 조각공 | 목조 각공 | 목재를 이용한 조각, 목조각물의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
| | 석조 각공 | 석재를 이용한 조각, 석조각물의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
| 10. 칠공 | | 옻 등의 전통 재료를 이용한 칠, 칠의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
| 11. 도금공 | | 도금, 도금과 관련된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
| 12. 표구공 | | 표구, 표구물의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
| 13. 조경공 | | 조경의 시공과 그에 따른 업무 |
| 14. 세척공 | | 세척과 그에 따른 업무 |
| 15. 보존과 학공 | 훈증공 | 재료나 자재의 살균 · 살충 · 방부 등을 위한 훈증과 그에 따른 업무 |
| | 보존 처리공 | 보존처리와 그에 따른 업무 |
| 16. 식물보호공 | | 식물의 보존 · 보호를 위한 병충해 방제, 수술, 토양개량, 보호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과 그에 따른 업무 |
| 17. 실측설계사보 | | 실측 및 설계도서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
| 18. 박제 및 표본제작공 | | 박제 · 표본 제작 및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
| | | 표본제작공 |
| 19. 모사공 | | 서화류의 모사와 그에 따른 업무 |
| 20. 온돌공 | | 온돌의 해체 · 설치 및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제한 없음

시험방법: 실기시험, 면접시험

- 실기시험: 심사위원 1명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1명당 40점 이상, 전 심사위원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 면접시험: 합격(가) · 불합격(부)만을 결정

* 심사위원 중 1인이라도 실기시험에서 40점미만 또는 면접시험에서 “부”평정시 불합격자로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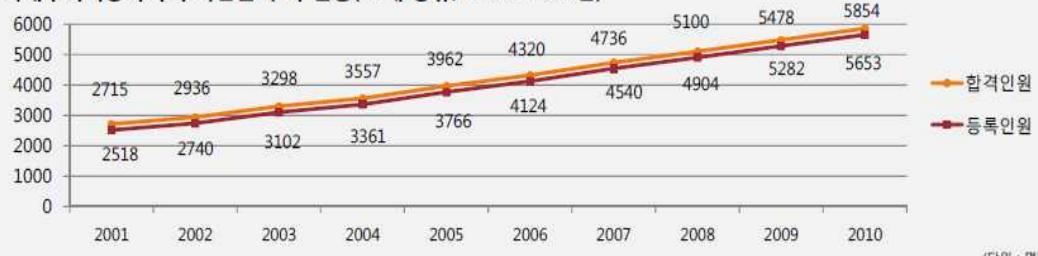
□ 응시추이 및 합격자 현황

○ 응시추이

| 구분 | 계 | '07년 이전 | '08 | '09 | '10 | '11 |
|--------|--------|---------|-------|-------|-------|-------|
| 응시자 | 11,857 | 6,838 | 1,141 | 1,211 | 1,320 | 1,347 |
| 합격자 | 3,835 | 2,376 | 364 | 378 | 382 | 335 |
| 합격률(%) | 32.3 | 34.7 | 31.9 | 31.2 | 28.9 | 24.9 |

○ 문화재수리기능자 등록인원

▪ 문화재수리기능자의 누적인원 추이 현황(18개 종류, 2001~2010년)



| 연도 | 한식 목공 | 한식 석공 | 화공 | 도장 이공 | 변아 와공 | 제작 외공 | 한식 미장공 | 철물공 | 조각공 | 칠공 | 도금공 | 표구공 | 조경공 | 세척공 | 보존 과학공 | 식물 보호공 | 실습설 계사보 | 박제및 표본 제작공 | 계 | 누적계 |
|-----------|----------|----------|-----|----------|----------|----------|-----------|-----|-----|-----|-----|-----|-----|-----|-----------|-----------|------------|------------------|-------|-------|
| 1971~1989 | 186 | 141 | 155 | 54 | 104 | 3 | 69 | 2 | 24 | 4 | 9 | 35 | 76 | - | 11 | - | - | - | 873 | 873 |
| 1990 | 8 | 3 | 6 | 1 | 3 | - | 6 | - | 2 | - | 1 | 2 | 2 | - | 2 | - | - | - | 36 | 909 |
| 1991 | 8 | 4 | 3 | 2 | 9 | - | 4 | 1 | 7 | - | 1 | 4 | 4 | - | 1 | - | - | - | 48 | 957 |
| 1992 | 15 | 6 | 1 | 5 | 14 | - | 2 | - | 10 | 4 | 4 | 2 | 2 | - | 3 | - | - | - | 68 | 1,025 |
| 1993 | 17 | 7 | 4 | 2 | 8 | - | 3 | 3 | 2 | - | 3 | 2 | 4 | - | - | - | - | - | 55 | 1,080 |
| 1994 | 23 | 10 | 7 | 3 | - | - | 3 | - | 7 | 5 | - | 4 | 3 | - | 2 | - | - | - | 67 | 1,147 |
| 1995 | 44 | 31 | 28 | 11 | 16 | - | 15 | 1 | 21 | 10 | 7 | 7 | 4 | - | - | 1 | - | - | 196 | 1,343 |
| 1996 | 33 | 17 | 9 | 4 | 13 | 1 | 4 | - | 12 | 3 | 7 | 1 | 7 | - | - | 10 | 6 | - | 127 | 1,470 |
| 1997 | 18 | 32 | 7 | 8 | 6 | 2 | 5 | - | 19 | 2 | 1 | 1 | 5 | - | 1 | 6 | 10 | - | 123 | 1,593 |
| 1998 | 26 | 22 | 3 | 3 | 7 | - | 10 | - | 10 | 2 | 2 | 1 | 16 | - | 1 | 5 | 5 | - | 113 | 1,706 |
| 1999 | 20 | 42 | 14 | 18 | 23 | - | 15 | 1 | 16 | 17 | 2 | - | 19 | - | 5 | 14 | 4 | - | 210 | 1,916 |
| 2000 | 36 | 46 | 19 | 22 | 12 | - | 17 | - | 11 | 21 | 3 | 4 | 24 | 1 | 5 | 7 | 6 | 239 | 2,155 | |
| 2001 | 74 | 62 | 63 | 35 | 18 | 1 | 22 | 1 | 10 | 24 | 12 | 1 | 17 | - | - | 7 | 5 | 2 | 354 | 2,509 |
| 2002 | 21 | 46 | 29 | 24 | 19 | - | 12 | - | 10 | 16 | 5 | 2 | 13 | - | 4 | 9 | 9 | 2 | 221 | 2,730 |
| 2003 | 84 | 47 | 24 | 21 | 37 | - | 23 | - | 15 | 24 | 9 | 3 | 31 | 1 | 20 | 8 | 10 | 5 | 362 | 3,092 |
| 2004 | 15 | 45 | 32 | 16 | 39 | - | 17 | 1 | 15 | 8 | 5 | 2 | 23 | 2 | 12 | 10 | 13 | 4 | 259 | 3,351 |
| 2005 | 51 | 69 | 54 | 28 | 41 | - | 27 | 2 | 12 | 30 | 14 | 2 | 26 | 4 | 22 | 8 | 10 | 5 | 405 | 3,756 |
| 2006 | 39 | 52 | 36 | 37 | 38 | - | 14 | - | 16 | 13 | 6 | 4 | 24 | 2 | 50 | 19 | 6 | 1 | 357 | 4,113 |
| 2007 | 74 | 65 | 29 | 31 | 41 | - | 28 | - | 18 | 19 | 13 | 3 | 27 | 5 | 40 | 8 | 12 | 3 | 416 | 4,529 |
| 2008 | 74 | 46 | 42 | 12 | 7 | - | 18 | - | 7 | 24 | 10 | 2 | 17 | 11 | 74 | 7 | 12 | 1 | 364 | 4,893 |
| 2009 | 76 | 38 | 34 | 17 | 12 | - | 26 | 3 | 11 | 16 | 3 | 3 | 22 | 12 | 72 | 11 | 20 | 2 | 378 | 5,271 |
| 2010 | 64 | 36 | 28 | 22 | 17 | - | 21 | 1 | 19 | 34 | 4 | 5 | 19 | 16 | 61 | 8 | 26 | 1 | 382 | 5,653 |
| 계 | 1,006 | 867 | 627 | 376 | 484 | 7 | 361 | 16 | 274 | 276 | 121 | 90 | 385 | 54 | 386 | 138 | 153 | 32 | 5,653 | |

□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취득자 대상 교육

- 사단법인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는 2010년 문화재수리기능인 교육을 2010년 12월 7일 국립민속박물관에서 기능인 자격의 신규취득자와 보유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교육목적은 정신

교육을 통하여 기능보유자로서의 자긍심과 사명감을 고취하고 상호 토론과 대화를 통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교환하며, 문화재수리정책에 대한 이해를 돋는 데 있다.

- 교육수료 현황

(단위: 명)

| 연도 | '92~99 | '00 |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총계 |
|----|--------|-----|-----|-----|-----|-----|-----|-----|-----|-----|-----|-----|-------|
| 인원 | 1,453 | 167 | 213 | 210 | 287 | 289 | 290 | 295 | 296 | 214 | 300 | 298 | 4,312 |

(출처: 2011년 문화재연감)

□ 진로 및 직업 전망

문화재수리협회/건설기술인협회/전담조직 신설의 움직임이 있고 전문분야인 만큼 응시요건에 실무경력을 추가해야한다는 연구논문(문화재자격시험개선연구 연구책임자: 황종구 교수)등을 감안할 때 그 희소성이 있으며, 지정문화재의 수가 늘어나고 있고 문화재의 보수주기가 짧아지고 있어 보수예산의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문화재 수리기능자의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추세에 있음.

15 문화재수리기술자

□ 문화재수리기술자



- ▶ 문화재수리기술자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문화재 수리기능자의 작업을 지도·감독
- ▶ 문화재수리기술자 시험제도는 문화재수리에 대한 전문이론과 현장실무를 모두 갖춘 전문 기술 인력을 배출, 문화재 수리현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부실시공을 방지하여 철저한 문화재 원형보존을 기하며, 문화재 수리기술 인력의 확대로 우리 문화재의 전통수리기법 및 방법, 기술능력 등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도입

□ 종류 및 담당 업무

| 종류 | 업무 범위 |
|---------|--|
| 1. 보수 | 가. 건축·토목공사의 시공 및 감리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유구(遺構)조사 및 수리(修理)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
| 2. 단청 | 가. 단청분야[불화(佛畫)를 포함한다]의 시공 및 감리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
| 3. 실측설계 | 가. 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 도서의 작성 및 감리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유구조사와 그에 따른 업무 |
| 4. 조경 | 가. 조경공사의 조경계획과 시공 및 감리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
| 5. 보존과학 | 가. 보존처리 시공 및 감리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
| 6. 식물보호 | 가. 식물의 보존·보호를 위한 병충해 방제, 수술, 토양개량, 보호시설 설치, 환경 개선 및 감리 나. 가목과 관련된 진단,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

□ 응시요건

- 현재는 실측설계기술자를 제외하고는 문화재수리기술자 시험 응시요건은 없지만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의 응시요건은 2015년부터 적용 시행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제2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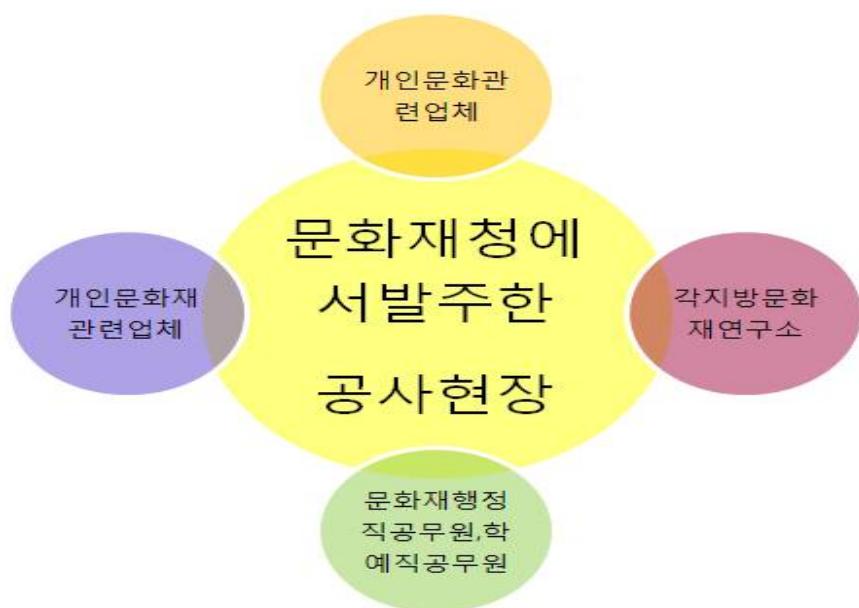
□ 응시추이 및 수리기술자 등록인원

- 1971년도에 신설되어 문화재청에서 2008년 공단시행에 따라 증가 추세
(단위 : 명)

| 구 분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
| 수험인원 | 2,865 | 3,279 | 2,057 | 2,301 | 2,241 |

□ 활동분야 및 배출인원

- 활동분야



○ 2000년 이후 배출인원

| 연도별 | 보수 | 단청 | 실측설계 | 조경 | 보존과학 | 식물보호 | 계 |
|-------|-----|-----|------|-----|------|------|-----|
| 2000년 | 21 | 20 | 4 | 10 | 0 | 0 | 55 |
| 2001년 | 10 | 22 | 0 | 1 | 3 | 0 | 54 |
| 2002년 | 19 | 28 | 1 | 3 | 1 | 2 | 63 |
| 2003년 | 30 | 22 | 0 | 6 | 0 | 5 | 63 |
| 2004년 | 30 | 23 | 0 | 11 | 3 | 3 | 70 |
| 2005년 | 16 | 31 | 1 | 13 | 6 | 6 | 73 |
| 2006년 | 13 | 24 | 0 | 10 | 6 | 7 | 60 |
| 2007년 | 26 | 35 | 3 | 8 | 6 | 3 | 81 |
| 2008년 | 17 | 20 | 3 | 14 | 15 | 3 | 72 |
| 2009년 | 26 | 23 | 3 | 9 | 15 | 7 | 83 |
| 2010년 | 29 | 22 | 5 | 18 | 14 | 6 | 94 |
| 2011년 | 24 | 16 | 5 | 14 | 12 | 9 | 80 |
| 전체 | 211 | 216 | 20 | 103 | 77 | 49 | 676 |

□ 진료 및 취업 전망

- 문화재 행정직 및 학예직 공무원 및 문화재수리기술자로 등록 후 활동
- 전문가로 활동, 문화재실측설계기술자, 문화재감정사, 문화재 보존가, 문화재분석원등 전문기관에서 활동
- 문화재 수리관련 기술자 및 문화재 지정 등록업체 활동
- 문화재 수리관련 기술자 등록현황 (단위 : 명)

| 구 분 | '07 | '08 | '09 | '10 | '11 |
|----------------|-------|-------|-------|-------|-------|
| 인원 | 1,134 | 1,206 | 1,289 | 1,382 | 1,462 |
| 전년대비 증감률(%) | 7.7 | 6.3 | 6.9 | 7.2 | 5.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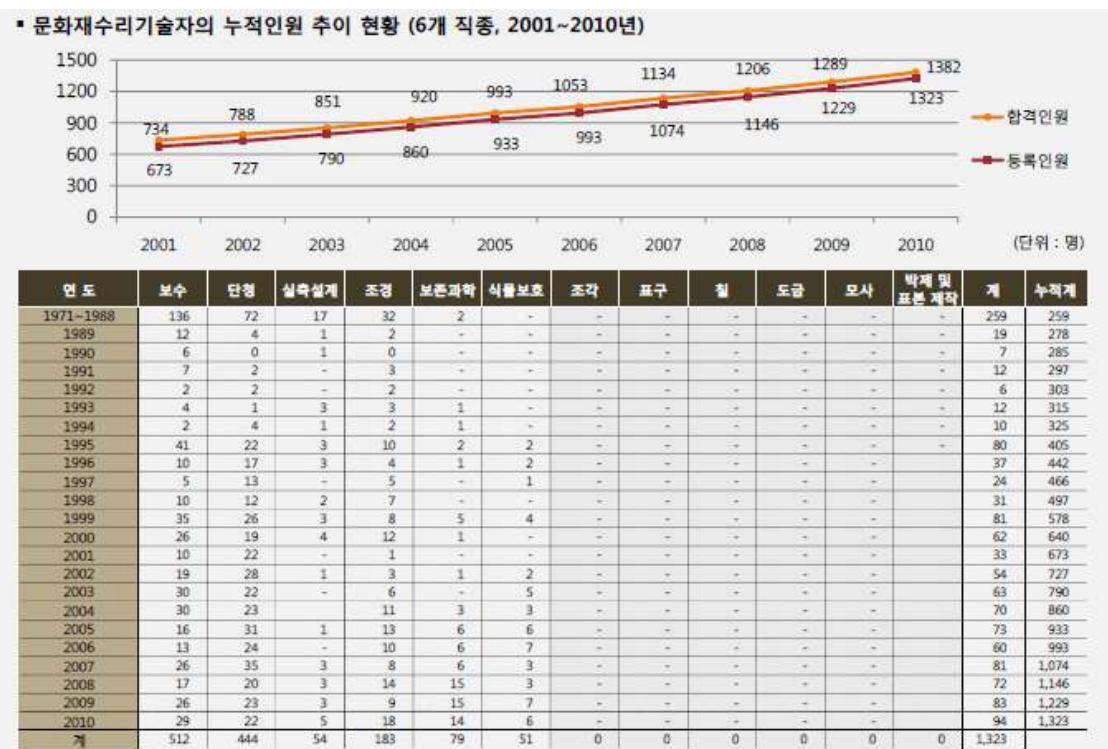
○ 문화재 지정 등록업체 현황

<출처 : 문화재청>

| 구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기타 | 합계 |
|------------------|------|-----|-----|-----|-----|-----|-----|-----|-----|-----|-----|-----|------|------|------|-----|----|-------|
| (국가지정문화재) | | | | | | | | | | | | | | | | | | |
| 국보 | 157 | 3 | 3 | 1 | 3 | 0 | 2 | 11 | 10 | 11 | 27 | 7 | 20 | 49 | 10 | 0 | 0 | 314 |
| 보물 | 561 | 21 | 49 | 23 | 9 | 5 | 6 | 138 | 67 | 69 | 93 | 85 | 158 | 299 | 142 | 3 | 0 | 1728 |
| 사적 | 66 | 4 | 7 | 18 | 2 | 1 | 4 | 64 | 16 | 18 | 48 | 34 | 43 | 97 | 51 | 6 | 0 | 479 |
| 명승 | 3 | 2 | 0 | 1 | 0 | 0 | 0 | 1 | 13 | 9 | 3 | 6 | 16 | 14 | 11 | 6 | 0 | 85 |
| 현연기념물 | 13 | 7 | 2 | 14 | 1 | 0 | 3 | 17 | 39 | 24 | 16 | 31 | 60 | 63 | 44 | 45 | 43 | 422 |
| 중요무형문화재 | 29 | 3 | 0 | 4 | 1 | 0 | 0 | 8 | 1 | 4 | 3 | 2 | 12 | 7 | 9 | 4 | 27 | 114 |
| 중요민속문화재 | 42 | 0 | 5 | 0 | 3 | 0 | 1 | 20 | 11 | 22 | 19 | 13 | 36 | 74 | 11 | 8 | 0 | 264 |
| 합계 | 871 | 40 | 66 | 61 | 19 | 6 | 16 | 259 | 157 | 157 | 209 | 178 | 344 | 603 | 278 | 72 | 70 | 3406 |
| (시도지정문화재) | | | | | | | | | | | | | | | | | | |
| 시도유형문화재 | 292 | 104 | 50 | 57 | 27 | 44 | 24 | 220 | 153 | 276 | 181 | 198 | 225 | 374 | 455 | 31 | 0 | 2711 |
| 시도무형문화재 | 42 | 17 | 16 | 24 | 17 | 18 | 4 | 46 | 20 | 24 | 43 | 56 | 39 | 90 | 31 | 19 | 0 | 446 |
| 시도기념물 | 29 | 48 | 17 | 62 | 26 | 41 | 46 | 187 | 80 | 122 | 169 | 109 | 195 | 146 | 249 | 67 | 0 | 1593 |
| 시도민속문화재 | 29 | 6 | 4 | 2 | 7 | 3 | 0 | 11 | 4 | 18 | 27 | 34 | 41 | 125 | 21 | 10 | 0 | 342 |
| 문화재자료 | 52 | 57 | 43 | 22 | 27 | 52 | 21 | 155 | 125 | 85 | 320 | 152 | 232 | 571 | 530 | 7 | 0 | 2451 |
| 합계 | 444 | 232 | 130 | 167 | 104 | 158 | 95 | 619 | 382 | 525 | 740 | 549 | 732 | 1246 | 1286 | 134 | 0 | 7543 |
| 지정문화재 총계 | 1315 | 272 | 196 | 228 | 123 | 164 | 111 | 878 | 539 | 682 | 949 | 727 | 1076 | 1849 | 1564 | 206 | 70 | 10949 |
| (등록문화재) | | | | | | | | | | | | | | | | | | |
| 등록문화재 | 109 | 11 | 8 | 5 | 10 | 17 | 5 | 31 | 35 | 22 | 38 | 45 | 69 | 26 | 37 | 21 | 0 | 489 |
| 총계 | 1424 | 283 | 204 | 233 | 133 | 181 | 116 | 909 | 574 | 704 | 987 | 772 | 1145 | 1875 | 1601 | 227 | 70 | 11438 |

○ 문화재수리기술자 등록인원

<출처 : 문화재청>



□ 동향분석 결과

- 옛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문화재 보존 정책에 따라 문화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어 자격취득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 문화재수리협회/건설기술인협회/전담조직 신설의 움직임이 있고 전문분야인 만큼 용시요건에 실무경력을 추가해야한다는 연구 논문(문화재자격시험개선연구 연구책임자 : 황종구 교수)등을 감안할 때 그 희소성이 있으며, 지정문화재의 수가 늘어나고 있고 문화재의 보수주기가 짧아지고 있어 보수예산의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문화재 수리기술의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 추세에 있음.

16 물류관리사

□ 물류관리사

- 물류의 표준화, 규격화, 정보화에 대하여 계획, 진단, 평가, 자문하고 물류전략을 수립하는 등 유통의 합리화와 원활화를 위한 업무를 담당
- ※ 응시자격 제한 없음

□ 응시추이

- '08년 위탁 최초시행 이후 수험인원이 증가하다 2010년을 기점으로 감소

(단위 : 명)

| 구 분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
| 수험인원 | 9,217 | 9,524 | 7,676 | 7,570 | |
| 합격자 | 1,722 | 1,891 | 2,303 | 1,231 | - |

□ 취업전망

- 물류관리사 자격증 취득이후 취업할 수 있는 분야는 물류시스템 기획, 물류센터운영, 수배송관리업무, 물류정보시스템개발, 물류 기술개발 관련분야
- ※ 앞으로 물류관리사를 채용하고 있는 기업에게 많은 정부지원이 있을 예정 미국이나 일본같은 선진국에서는 정부가 물류관리사를 채용하고 있는 기업에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음

□ 자격동향분석 결과

- 무한경쟁시대에 있어서 기업경쟁력의 향상 요청에 따라 물류가 기업경영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이에 따라 물류 부분에 대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각 기업의 물류전문 인력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 국내 물류전문인력 수요가 4만여명 (제조업은 3만여명, 유통업은 1만여명)에 이르러, 물류관련분야에 좋은 조건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전망이 좋은 자격증임
- ※ 물류관련분야의 인력이 제조업의 경우 47%, 유통업의 경우 24%가 부족한 상태

17 박물관 및 미술관 준학예사

□ 박물관및미술관준학예사

- 박물관및미술관준학예사는 학예사가 되기 이전단계의 직책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의 경우를 말하며,
- 각급 박물관과 미술관들에 있어 전시나 기획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격제의 도입을 통하여 박물관, 미술관에 근무하는 학예 종사 인력의 질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이들의 전문성을 국가가 공식으로 인정함으로써 전문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입된 국가전문자격사

□ 학예사 구분

○ 박물관 학예사

박물관에 보관중인 각종 실물, 표본, 사료(史料), 문헌들을 수집, 정리, 보존하고 전시회 개최 준비를 함

○ 미술관 학예사

예술작품의 전시를 기획하는 사람으로 전시회의 주제를 결정하고 작가와 작품에 대한 조사연구를 거쳐 작가 섭외 및 작품을 선정함.

□ 학예사 자격등급

- 1급 정학예사, 2급 정학예사, 3급 정학예사, 준학예사

□ 박물관및미술관준학예사 자격 배출 인원

| 구 분 | 계 | '07이전 | '08년 | '09년 | '10년 | '11년 |
|-----|-----|-------|------|------|------|------|
| 인원수 | 879 | 582 | 71 | 94 | 47 | 85 |

□ 응시추이

- 최근 5년간 박물관및미술관준학예사 응시인원은 큰 변동폭이 없으며, 일정한 수험인원이 지속적으로 형성될 것으로 전망

(단위 : 연도, 명)

| 구 분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
| 수협인원 | 864 | 1,036 | 883 | 887 | |

□ 취업현황 및 전망

-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으며, 아울러 지방자치제의 활성화와 정부차원의 사립 박물관의 신설을 장려하고 있어 학예사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보임
- 현재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학예사자격증 소지자(준학예사자격증 포함)을 1인 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하여야 하지만 학예사 수가 한정되어 있고 결원시마다 충원하는 방식으로 채용이 이뤄지고 있어 취업 경쟁률은 높을 것으로 예상됨

□ 동향분석 결과

- 학예사는 한국고용정보원이 실시한 직업만족도조사 결과 759 직업군에서 직업만족도 6위, 동 조사 5개 문항별 만족도 중 발전가능성항목에서 1위를 차지하였음
- 학예사는 박물관의 전시와 운영 및 자료 연구를 담당하는 전문가로써, 박물관에서는 <박물관의 꽃>이라고 불리나 이러한 중요성에 비추어 보아서 아직까지는 근무환경이 그다지 우수한 편이 아닌 것이 단점일 수 있으나 전국 각지에 박물관과 다양한 전시관 및 기업의 자료전시관 등의 건립 붐으로 비추어 보아서 앞날이 밝을 것으로 전망됨

18 방사선취급 감독자면허

□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 원자력시설 운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이용자 및 종사자에 대한 자격면허
 - * 이공계 4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실무2년 이상 종사
 - 동 자격취득 후 장비수량 및 등급에 관계없이 방사선을 발생시키는 모든 장비를 사용할 수 있음

□ 응시추이

- '08년 위탁 최초시행 이후 점차 증가 추세

(단위 : 명)

| 구 분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
| 수험인원 | 260 | 312 | 337 | 335 | |
| 합격자 | 33 | 23 | 10 | 46 | - |

□ 취업전망

-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하는 의료기관과 연구기관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 사용량도 점차 증가하고 있으므로 RI폐기물의 발생량이 매년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동 자격면허자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방사성동위원소(RI) 이용기관

- 농업분야 : 식품보존, 품종개발, 지질·지하수 조사
- 의료분야 : 의료기구 멸균, 병의 진단과 치료
- 공업분야 : 비파괴검사, 정밀측정, 강화수지 생산
- 연구분야 : 식품생리, 물성변화, 고고학 연구
- 조사분석 : 공해조사, 유해물질 분해, 범죄수사

* 방사선 이용기관 등록·허가업체수 : 현재 약 5,000개 <자료출처: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방사선작업 종사자 수 : 약 5만명<자료출처: 한국동위원소협회,2006년>

□ 동향분석 결과

- 일정용량 이상의 방사선을 이용하는 원자력 관련 시설에서는 원자력안전법91조에 따라 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면허이며, 원자력산업의 꾸준한 발전에 따라 면허소요가 늘어나 그에 따른 응시자도 점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시험대상이 특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기관(분야)대상으로 자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 있음

19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일반면허

□ 방사성동위원소 일반면허

- 원자력시설 운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이용자 및 종사자에 대한 자격면허

※ 이공계 2년이상 수료후 실무경력 1년 필요

□ 응시추이

- '08년 위탁 최초시행 이후 수험인원이 꾸준히 증가

(단위 : 명)

| 구 분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
| 수험인원 | 2,172 | 2,571 | 2,857 | 2,626 | 3,928 |
| 합격자 | 774 | 238 | 439 | 208 | - |

□ 취업전망

-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하는 의료기관과 연구기관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 사용량도 점차 증가하고 있으므로 RI폐기물의 발생량이 매년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동 자격면허자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방사성동위원소(RI) 이용기관

- 농업분야 : 식품보존, 품종개발, 지질·지하수 조사
의료분야 : 의료기구 멸균, 병의 진단과 치료
공업분야 : 비파괴검사, 정밀측정, 강화수지 생산
연구분야 : 식품생리, 물성변화, 고고학 연구
조사분석 : 공해조사, 유해물질 분해, 범죄수사

※ 방사선 이용기관 등록·허가업체수 : 현재 약 5,000개

※ 방사선작업 종사자 수 : 약 5만명

□ 동향분석 결과

- 일정용량 이상의 방사선을 이용하는 원자력 관련 시설에서는 원자력안전법91조에 따라 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면허이며, 원자력산업의 꾸준한 발전에 따라 면허소요가 늘어나 그에 따른 응시자도 점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시험대상이 특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기관(분야)대상으로 자격에 대한 홍보 강화 필요

□ 한미FTA가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일반면허 자격시험에 미치는 영향

- 시장개방 시에는 상대국의 기술 및 시장의 국내 유입가능성이 크므로 국내 방사선 발생장치 분야의 자립기반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큼
 - 방사선발생장치 생산이 근래에 활성화되고 있지만, 아직 기업의 영세성 등으로 자립기반이 미흡한 실정임, 그에 따른 보호육성이 필요
- 따라서, 한미FTA체결로 방사선발생장치의 수입관세가 철폐되면 국내 제조업체수가 축소될수 있고, 그에따른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일반면허 자격취득자에 대한 수요 또한 감소될 우려가 있음

20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특수면허

□ 방사성동위원소 특수면허

- 원자력시설 운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이용자 및 종사자에 대한 자격면허

※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실무 1년 이상 종사

□ 응시추이

- '08년 위탁 최초시행 이후 매년 평균 55명 응시
(단위 : 명)

| 구 분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
| 수험인원 | 51 | 57 | 52 | 62 | |
| 합격자 | 18 | 17 | 9 | 21 | - |

□ 취업전망

-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하는 의료기관과 연구기관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 사용량도 점차 증가하고 있으므로 RI폐기물의 발생량이 매년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동 자격면허자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방사성동위원소(RI) 이용기관

- 농업분야 : 식품보존, 품종개발, 지질·지하수 조사
의료분야 : 의료기구 멸균, 병의 진단과 치료
공업분야 : 비파괴검사, 정밀측정, 강화수지 생산
연구분야 : 식품생리, 물성변화, 고고학 연구
조사분석 : 공해조사, 유해물질 분해, 범죄수사

※ 방사선 이용기관 등록·허가업체수 : 현재 약 5,000개 <자료출처: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방사선작업 종사자 수 : 약 5만명<자료출처: 한국동위원소협회,2006년>

□ 동향분석 결과

- 응시자격이 제한되어있는 전문직종으로서 급격히 응시자가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단, 원자력산업의 꾸준한 발전에 따라 동 자격의 위상 또한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시험대상이 특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기관(분야)대상으로 자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 있음

21 변리사

□ 변리사

- 특허·실용신안·의장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권리취득 및 분쟁 해결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자격사

□ 변리사 배출예상 인원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도입으로 변리사 자격자 상승 예상

| 구 분 | 합계 | 변리사자격시험 | | 변호사 | 로스쿨 |
|-----|--------|---------|--------|-------|-------|
| | | 일반 | 특허청경력자 | | |
| 인원수 | 420명 | 200명 | 20명 | 100명 | 100명 |
| 비율 | 100.0% | 47.6% | 4.7% | 23.8% | 23.8% |

※ 변리사는 변리사시험에 합격하거나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변리사 등록을 한 사람에게 자격 부여(변리사법 제3조)

□ 응시추이

- 최근 5년간 변리사 응시인원은 큰 변동폭이 없으며, 일정한 수험 인원이 지속적으로 형성될 것으로 전망

(단위 : 명)

| 구 分 |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
| 수험인원 | 1차 | 3,766 | 3,722 | 4,122 | 3,921 | 3,650 |
| | 2차 | 1,525 | 1,260 | 1,371 | 1,367 | - |
| 합격자 | 1차 | 644 | 626 | 605 | 627 | - |
| | 최종 | 219 | 226 | 244 | 240 | - |

□ 취업현황 및 전망

-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면 대부분 특허법률사무소에 취직하는 것이 일반이며, 개업하는 경우 3~5명이 동업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특별한 경력의 소유자 이외에는 단독개업은 극소수임
-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으로 변호사의 업무영역 침범 등의 부정적 시각도 있으나, 한미FTA 도입 및 특허분쟁의 증가로 자격취득자 대부분이 취업하고 있으며, 종전보다 업무확대가 기대되고 있음

□ 동향분석 결과

- 동 자격은 최소합격인원(연200명)제를 도입하고 있어 진입장벽이 높지 만 취득시 한미FTA시행 및 최근 국제 특허분쟁의 증대 등에 따른 업무 영역확대 및 그 중요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 각 대학의 수준평가나 사회적 인지도 부분에서 변리사 자격시험은 행정고시, 사법고시, 공인회계사 시험과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음

22 사회복지사 1급

□ 사회복지사

-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

□ 응시수요

- 사회복지사 교육기관을 통해 배출되는 인원은 연간 57,000명('10년기준)
※ 복지전공 대학졸업자는 바로 응시가능하고 전문대학 졸업자는 1년 실무경력 필요

□ 응시추이(1급)

- '03년 최초시행 이후 평균 15천명 수준이었으나 '09년 이후 25천명이상으로 지속 증가

(단위 : 명)

| 구 분 | 2003~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
| 수험인원 | 87,652 | 29,770 | 26,587 | 25,471 | 28,143 |
| 합격자 | 29,857 | 7,081 | 9,700 | 3,119 | - |

□ 취업전망(1, 2, 3급 전체)

- '10년 현재 사회복지사 수요는 약 67,000명에서 최대 144,000명 정도이나 사회복지사 노동시장은 약 390,000명으로 수요대비 공급초과 상태임
 - 사회복지사 교육기관이 '07년 609기관에서 '10년 1,600기관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회복지사 인력 과다 배출
- ※ 1급과 2급 자격증 간에 거의 차별이 없음(2급은 전문대학에서 복지전공하면 취득 가능)

□ 동향분석 결과

- 자격취득자에 대한 일자리 정보제공을 통한 취업연계방안 등 적극 행정 강구 필요

23 산업안전(위생)지도사

□ 산업안전(위생)지도사

○ 산업안전지도사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지도, 유해·위험의 방지대책에 관한 평가·지도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등

○ 산업위생지도사

작업환경의 평가 및 개선 지도, 작업환경 개선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산업위생에 관한 조사·연구 등

□ 도입목적

○ 행정규제 완화방침에 따라 사업장 내의 자율안전관리가 취약해질 우려가 있고, 생산설비의 노후화 등으로 대형 산업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사업장 내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대처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산업안전·위생지도사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음.

※ ‘96년도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첫시행 후 장기 미시행하다가 ‘12년부터 공단에서 시행

□ 취득 방법

○ 응시자격 : 제한 없음

○ 시험과목 및 시간

| 구 분 | 교시 | 시험 과목 | | | 시험 시간 |
|--------|----|---------------|-------------------------------------|--|----------------------------------|
| 제1차 시험 | 1 | 공통필수 (3) | ▪ 공통필수 I ▪ 공통필수 II ▪ 공통필수 III | | 90분 - 5지 선택형 : 과목당 25문제 |
| 제2차 시험 | 1 | 전공필수 (택 1) | 산업안전 지도사 | ▪ 기계안전공학 ▪ 전기안전공학 ▪ 화공안전공학 ▪ 건설안전공학 | 100분 - 주관식 논술형 4개(필수2/선택1) |
| | 1 | 전공필수 (택 1) | | ▪ 산업의학 ▪ 산업위생공학 | - 주관식 단답형 5문제(전항 작성) |
| 제3차 시험 | - | - | ▪ 면접시험 | | 1인당 20분 내외 |

- 일부과목 면제 가능[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36조의2 해당자]
- 과목면제자 제출서류
해당 자격증 또는 박사학위증(전공 기록)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증명서 1부, 경력증명서(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전담경력 기록) 1부.
- 합격자 결정방법
 - ▶ 제1·2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 제3차 시험 : 10점 만점에 6점 이상 득점한 자

□ 해외 사례

- (일본)일본은 1972년 노동안전위생법 제정 시 사업장의 자율적 안전위생활동의 추진을 위해 민간 전문가의 전문적인 지도, 조언의 필요성에 따라 지도사 제도를 도입
- (미국)일정규모 이하의 유해위험업종 사업장의 사업주가 신청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청(OSHA)감독관이 국고로 컨설팅을 실시(정부의 컨설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1년간 지도 감독 면제)되며 OSHA조직 내에 안전보건컨설턴트를 두고 사업장에 대한 산업재해예방에 필요한 기술적 지도를 주관하고 있으며 미국내의 일부 주(뉴욕주)에서는 감독관이 일반사업장을 감독지도하는 반면, 컨설턴트는 문제가 많은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 안전 보건지도를 주관하여 실시

□ 진로 및 전망

지도사는 일종의 개인사업 면허 자격이며, 앞으로는 대기업에서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정착되도록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업을 지원하는데 지도사의 역할이 부각될 전망이며,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로도 취업이 가능할 것임.

24 세무사

□ 세무사

-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전문자격사
-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 및 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포함)의 대리업무와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및 작성의 대행, 상담 등의 업무를 하며 전통적으로 고소득 직군에 속함

□ 세무사 제도 연혁 및 현황

- 1961년 세무사법 제정이후 2012년 현재 제49회 시험이 진행됨
※ 2002년 이후 최소합격인원제 도입
- 2011. 12. 기준으로 195개 법인, 9,600여명의 세무사가 활동(한국세무사회)

□ 세무사 응시추이

- 2009년 영어시험의 공인어학성적 대체 이후 큰폭으로 수험인원이 감소하였으나, 이후 계속 증가하여 공인어학성적 대체 전 수준 까지 도달

(단위 : 명)

| 구 분 |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
| 수험인원 | 1차 | 7,869 | 3,820 | 5,494 | 7,198 | 7,842 |
| | 2차 | 1,940 | 3,017 | 4,107 | 4,477 | |
| 합격자 | 1차 | 756 | 968 | 1710 | 1374 | |
| | 최종 | 633 | 631 | 640 | 630 | |

※ 2009년 공단위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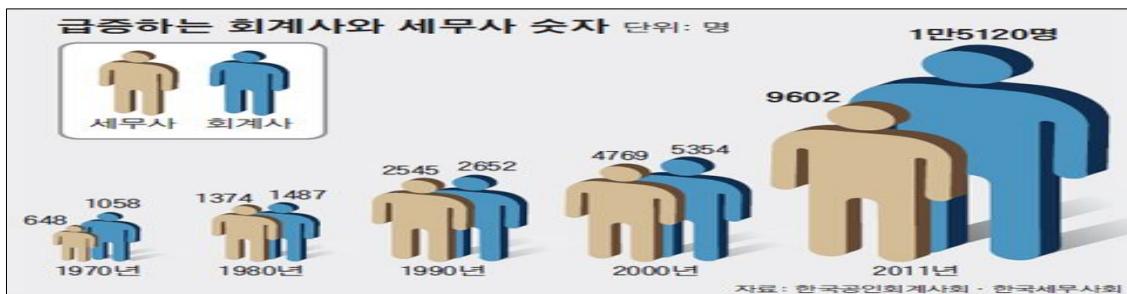
□ 취업현황 및 전망 등

- 세무사 독자적 업무영역 부재의 전통적 약점 존재



- 다만, 최근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동자격을 부여 제도 폐지, 사법 보좌관 제도 추진, 조세제도가 복잡화 등 세무사 업무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

<세무·조세제도 복잡화(경제체제 발전)에 따른 최근 세무인력 증가 현황>



- 한-미, 한-유럽 FTA 등의 체결·발효로 외국 세무사 등도 국세청으로부터 자격승인 및 등록을 거쳐 국내에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나, 이는 해당 국가의 조세법령 및 조세제도와 국제조세법령 자문으로 업무범위가 제한되어 국내 세무사의 업무범위 축소 우려는 없음
 - 오히려 국내 세무사의 외국세무자문사 취업기회가 확대되는 등 FTA로 인한 세무사의 업무전망을 밝을 것으로 보임
- 수입은 2011년도 국세청 조사결과 1인당 평균매출이 연간 2억 4400만원으로 매우 높은 편에 속함

| 구 분 | 관세사 |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 무사 |
|------|----------|----------|----------|----------|
| 연 매출 | 3억2800만원 | 3억9300만원 | 2억8300만원 | 2억4400만원 |

25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대상물의 고층화, 지하화, 복잡화 현상에 따라 이를 전문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됨으로서 1,500m² 이상의 건물에 설치돼 있는 소방시설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통보하거나 특정 건물의 방화관리자로 선임돼 그 역할을 수행하는 인력을 배출하기 위한 자격제도

□ 변천과정 및 직무분야

○ 변천과정

- 1993. 5. 제1회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 시행(중앙소방학교)
- 2008. 8. 제10회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부터 공단에서 시행

○ 수행직무

- 소방시설관리사는 소방시설의 점검 및 정비*, 건축물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화기취급 감독 등 방화관리에 관한 사항, 위험물제조소 등의 완공검사·위험물 안전성능시험 및 정기점검에 관한 사항, 건축물 소유자 등이 위탁하는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점검업무 등을 주요 직무로 함

* 연면적 5,000m² 이상의 건축물로서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 분무 등 소화 설비가 설치된 특성소방대상물(아파트의 경우 16층 미만 제외)

□ 응시추이 및 합격자 현황

(단위 : 명)

| 구분 | 차수 | 계 | 10회 (‘08.9.28) | 11회 (‘10.9.5) | 12회 (‘11.8.21) |
|--------|----|--------|-------------------|------------------|-------------------|
| 응시자 | 1차 | 10,364 | 3,371 | 3,739 | 3,254 |
| | 2차 | 7,097 | 3,156 | 2,081 | 1,860 |
| 합격자 | 1차 | 3,685 | 1,287 | 1,318 | 1,080 |
| | 2차 | 511 | 105 | 190 | 216 |
| 합격률(%) | 1차 | 35.5 | 38.2 | 35.3 | 33.2 |
| | 2차 | 7.2 | 3.3 | 9.1 | 11.6 |

□ 법적 배치 근거(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4조 등)

○ 방화관리대상

- 1급 방화관리대상

■ 연면적 15,000m²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가연성 가스 1천톤 이상 저장 · 취급시설

- 2급 방화관리대상

■ (간이)스프링클러, 물분무등소화설비 등 설치대상 특정소방대상물

■ 옥내소화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 특정소방대상물

■ 지하구, 주택법시행령 제6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저장 · 취급하는 시설

- 방화관리자 선임대상(출처: 소방방재 주요통계 및 자료)

| 관서명 | 총계 | 1급대상 | | | | 2급대상 | | | | | | |
|-----|---------|-------|--------------------------|--------|-------------|---------|---------------|-----------|------------|-------------|-----|-------------------|
| | | 소계 | 연면적1만5천m ² 이상 | 11층 이상 | 가연성가스1천톤 이상 | 소계 | 스프링클러물분무등설치대상 | 옥내소화전설치대상 | 자동화재탐지설치대상 | 가연성가스1천톤 미만 | 지하구 | 공동주택(주택법시행령63조1항) |
| 계 | 266,641 | 8,038 | 5,081 | 2,920 | 37 | 217,522 | 32,053 | 44,469 | 128,789 | 296 | 680 | 11,137 |

| 공공기관대상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 | 국공립 학 교 | | | 정부투자 기 관 | | |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 | 사립학교 | | |
| 1 급 | 2 급 | 일 반 | 1 급 | 2 급 | 일 반 | 1 급 | 2 급 | 일 반 | 1 급 | 2 급 | 일 반 | 1 급 | 2 급 | 일 반 | 1 급 | 2 급 | 일 반 |
| 912 | 22,870 | 17,299 | 346 | 7,986 | 12,381 | 113 | 8,430 | 2,379 | 136 | 1,470 | 697 | 136 | 1,429 | 518 | 181 | 3,555 | 1,324 |

- 위험물안전관리자

| | | |
|------------|---------|--------|
| 위험물국가기술자격자 | 제조소등의 수 | 92,522 |
| | 선임자 | 59,558 |
| | 소 계 | 11,732 |
| | 위험물기능장 | 54 |
| | 위험물산업기사 | 1,951 |
| | 위험물기능사 | 9,727 |
| 기타 자격자 | 소 계 | 47,826 |
| | 강습 수료자 | 45,723 |
| | 관련자격 겸직 | 277 |
| | 일정요건 구비 | 1,826 |

□ 응시자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 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

- 소방기술사·위험물기능장·건축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 소방설비기사 자격취득 후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 소방안전공학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 소방안전관리학과 졸업 후,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취득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소방안전관련학과 졸업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 산업안전기사 자격취득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 10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 진로 및 직업전망

- 국가 경제 및 산업의 발달로 소방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증가 추세에 있어 소방안전관리의 전문적인 기법 및 지식을 연구 발전시켜 나가야하는 과제가 수반되므로 소방안전관리의 전무 직업인으로서의 소방시설관리사의 전망은 밝다고 볼 수 있음

26 소방안전교육사

□ 소방안전교육사

- 화재 등 재난·재해 사고발생시 인명 및 재산피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을 조기에 제거하거나 대처하기 위하여 안전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사고예방과 부상방지프로그램을 시행, 교육 및 조정할 수 있도록 교육된 자

□ 도입목적 및 주요업무

○ 도입목적

- 보육시설의 영유아, 유치원의 유아,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화재예방과 화재발생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는 인력을 배출하기 위한 자격제도

○ 주요업무

- 소방안전교육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소방안전교육의 진행 프로그램개발과 교육내용의 분석 및 평가하여 학생별 맞춤형 소방 안전교육 실시를 위한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
 - ☞ 안전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시행(연간, 분기, 반기, 월간 등)
 - ☞ 안전교육 교수 및 학습지도안의 작성
 - ☞ 학습방법에 대한 연구개발
 - ☞ 학습 준비물의 제작 및 연찬 계획의 수립 시행
 - ☞ 연중 재난발생 경향 파악 및 연령별/계층별에 따른 교육지도
 - ☞ 교육결과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마련

□ 응시추이 및 합격자 현황

○ 응시추이

| 구분 | 차수 | 계 | 1회 ('08.9.28) | 2회 ('10.10.3) | 3회 ('11.6.19) ('11.10.9) |
|--------|----|------|------------------|------------------|--------------------------------|
| 응시자 | 1차 | 934 | 429 | 338 | 167 |
| | 2차 | 509 | 183 | 229 | 97 |
| | 3차 | 23 | | | 23 |
| 합격자 | 1차 | 472 | 217 | 224 | 31 |
| | 2차 | 71 | 19 | 29 | 23 |
| | 3차 | 23 | | | 23 |
| 합격률(%) | 1차 | 50.5 | 50.5 | 67.4 | 18.5 |
| | 2차 | 13.9 | 10.3 | 12.6 | 23.7 |
| | 3차 | 100 | | | 100 |

○ 합격자 지역별 분포 현황

| 지역 년도 | 강원 도 | 경기 도 | 경상 남도 | 경상 북도 | 광주광 역시 | 대구광 역시 | 대전광 역시 | 부산광 역시 | 서울특 별시 | 인천광 역시 | 전라 남도 | 전라 북도 | 충청 남도 | 충청 북도 | 소계 |
|----------|---------|---------|----------|----------|-----------|-----------|-----------|-----------|-----------|-----------|----------|----------|----------|----------|----|
| 2008 | | 3 | 1 | | 3 | 3 | | 1 | 4 | | | 1 | 1 | 2 | 19 |
| 2010 | | 2 | 2 | 1 | 5 | 1 | 3 | 2 | 9 | 1 | 1 | 1 | | 1 | 29 |
| 2011 | 1 | 4 | 1 | | 4 | 2 | 1 | 3 | 3 | | 2 | 1 | | 1 | 23 |
| 소계 | 1 | 9 | 4 | 1 | 12 | 6 | 4 | 6 | 16 | 1 | 3 | 3 | 1 | 4 | 71 |

□ 법적 배치 근거

-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10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 법 제17조의4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 ☞ 법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안전협회
-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11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별 배치기준) 법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 대상별 배치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별표 2의2]

| 배치대상 | 배치기준(단위:명) | 비고 |
|-----------|--------------------------|----|
| 소방방재청 | 2인 이상 | |
| 소방본부 | 2인 이상 | |
| 소방서 | 1인 이상 | |
| 한국소방안전협회 | 본회 2인 이상 시·도지사: 1인 이상 | |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2인 이상 | |

[예상배치인원 현황]

| 배치대상 | 수(개소) | 배치기준(명) | 예상배치인원(명) |
|-------------|-------|---------|-----------|
| 소방본부 | 16 | 2 | 32 |
| 소방서 | 183 | 1 | 183 |
| 소방방재청 | 1 | 2 | 2 |
| 한국소방안전협회 본회 | 1 | 2 | 2 |
| 시·도지부 | 14 | 1 | 14 |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2 | 2 | 2 |
| 합계 | 217 | | 235 |

□ 해외 사례

- (일본)일본 기타큐슈시의 경우 관할 교육위원회와 협의 하에 정규 교과목에 소방안전교육을 편입하고 소방공무원 중 지원자를 교육 훈련 후 임기 3년의 강사로 선임해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있음

- (미국) 미국의 경우도 소방교육기관에서 일정 기간의 교육 이수 후 자격을 부여해 현직교사로 활동중이거나 소방공무원으로 선별 채용해 교육프로그램을 전담하는 인력들이 활동하고 있음

□ 진로 및 직업 전망

정부에서는 소방방재청 및 각 시도 소방본부와 각 학교에 소방안전 교육사를 배치하여 국민과 학생들에게 화재에 대한 전문적이고 실용적인 교육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2011년까지 총3회에 걸쳐 71명의 소방안전교육사가 배출되었지만 법규에서 명시한 배치 인원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기에 전망이 밝음.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 정수시설운영인력을 전문자격화 하고 일정규모 이상 정수장에 배치를 의무화 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 공급 및 수돗물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향상 도모 ※ 2007년도 자격 신설

□ 수행직무

- 수돗물의 공급, 수도시설의 관리, 수도 관련 통계자료의 관리, 수질관리 및 긴급조치와 수도시설 운영요원의 교육에 관한 총괄업무 수행

□ 응시추이

- '08년 위탁 최초시행 이후 수험인원이 꾸준히 감소

(단위 :년도, 명)

| 구 분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
| 수험인원 | 4,785 | 4,137 | 2,971 | 1,827 | 1,317 | 546 |
| 합격자 | 947 | 460 | 161 | 190 | 76 | - |

※ 2007년 신설하여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시행 '08년 공단으로 이관되어온 아래 매년 28%정도 수험인원이 감소하고 있음

□ 진로 및 전망

- 환경부는 '05.12.29 수도법 개정을 통해 먹는 물을 생산하는 정수장의 근무인력을 전문자격화하기 위하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국가자격제도를 신설하였으며, '09년에는 5만톤/일 규모 이상의 정수장부터 시작하여 '10년까지는 5백톤/일 규모 이상의 정수장에는 최소 1명 이상의 자격취득자 배치를 의무화 함.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주관부처인 환경부에서 자격취득자에 대하여 공무원 채용시 가산점 부여 추진

□ 동향분석 결과

- 현재 대부분의 수험자가 정수시설 보유기관(수자원공사, 지방자치단체)의 재직자이며 자격 취득자의 수요가 한정되어 있어 수험인원이 매년 감소하고 있으므로 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방안 강구 필요

28 주택관리사보

□ 주택관리사보

- 주택관리사보는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 등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관리하며,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함.

□ 주택관리사보 제도 연혁 및 현황

- 1989년 제도 첫 도입. 1997년 1월 1일부터 자격증 소지자의 채용을 의무화하는 규정 시행
- 2005년까지는 격년제로 시행하였으나, 2006년부터 매년 1회 1시행하고 있으며,
- 주택법시행령 제118조(업무의 위탁)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시행일 2008.1.1)
- 2011년부터 1·2차 시험 응시수수료 조정 및 시행방법변경(통합 → 분리)

□ 응시추이 및 합격자 현황

- 부동산 경기 및 정부 정책에 따라 수험인원이 유동적으로 증감

| 구분 | 계 | 10회 ('07.10.21) | 11회 ('08.9.7) | 12회 ('09.9.20) | 13회 ('10.9.19) | 14회 (1차:'11.7.15) (2차:'11.9.23) |
|--------|------------|--------------------|------------------|-------------------|-------------------|---------------------------------------|
| 응시자 | 357,539 | 17,145 | 14,303 | 15,261 | 15,054 | 1차: 17,238 2차: 3,608 |
| 합격자 | 45,509 | 1,508 | 2,751 | 3,491 | 2,698 | 1차: 2,915 2차: 3,385 |
| 합격률(%) | 평균 14.8 | 8.8 | 19.2 | 22.8 | 17.9 | 1차: 16.9 2차: 93.8 |

○ 합격자 동향 분석 결과

공동주택의 시설 및 환경관리·주민권익보호 등 관리자 역할을 요구하다 보니 여성보다는 남성이, 연령대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지식과 노련함이 필요한 40·50대가 주류며, 지역별 현황은 대규모의 공동주택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에 대다수 분포

□ 법적 배치 근거

- 주택관리업자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에 한함) 또는 임대사업자(『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 사업자"를 말함)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 배치
 -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
 -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주택관리사
- (근거 규정 : 주택법 제55조제1항 및 동 시행령 제72조)
- 주택법 제43조제1항 및 동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배치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의 공동주택

□ 진로 및 직업전망

- 자격증 취득 후 아파트 단지나 빌딩의 관리소장, 건설회사 등에 과장급으로 취업가능. 공사 및 건설업체·전문 용역업체 등에 취업, 공동주택의 운영, 관리, 유지, 보수 책임자 등

□ 고용현황

- 주택관리사 배치현황 ('10.12.31 기준)

| 구 분 | 계 | 150세대 미만 | 150세대이상 ~500미만 | 500세대 이상 |
|--------|--------|----------|----------------|----------|
| 계 | 13,582 | 855 | 7,424 | 5,303 |
| 주택관리사 | 10,033 | 377 | 4,395 | 5,261 |
| 주택관리사보 | 3,549 | 478 | 3,029 | 42 |

- 출처: 2011년도 주택업무편람(국토해양부)

○ 주택관리업 등록현황

('11.7.31 기준)

| 시 · 도 | 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
| 업자수 | 509 | 198 | 53 | 26 | 17 | 18 | 17 | 4 | 78 |
| 시 · 도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 업자수 | 13 | 8 | 8 | 13 | 13 | 16 | 27 | 0 | |

- 출처: 2011년도 주택업무편람(국토해양부)

□ 한미FTA가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미치는 영향

- 한미FTA가 공식 발효됐지만 미국인의 사업목적 이외의 토지 취득을 금지해 부동산 투기 등에 대한 가능성을 낮췄고, 부동산 중개와 감정평가분야는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하도록 하는 현 개방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당장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파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또한 양국 건설시장의 제도나 환경 차이(국내에서 건설업 영위시 건설업 등록, 기술자는 기술협회 등록 요구)로 인해 건설사들이 직접 진출하는 것도 사실상 쉽지 않음.

다만 협정에서 공공복리 성격이 강한 부동산 가격안정화 조치 등은 간접수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해 소송 가능성(ISD: 투자자 국가소송제도)은 낮지만 예외조항이 있어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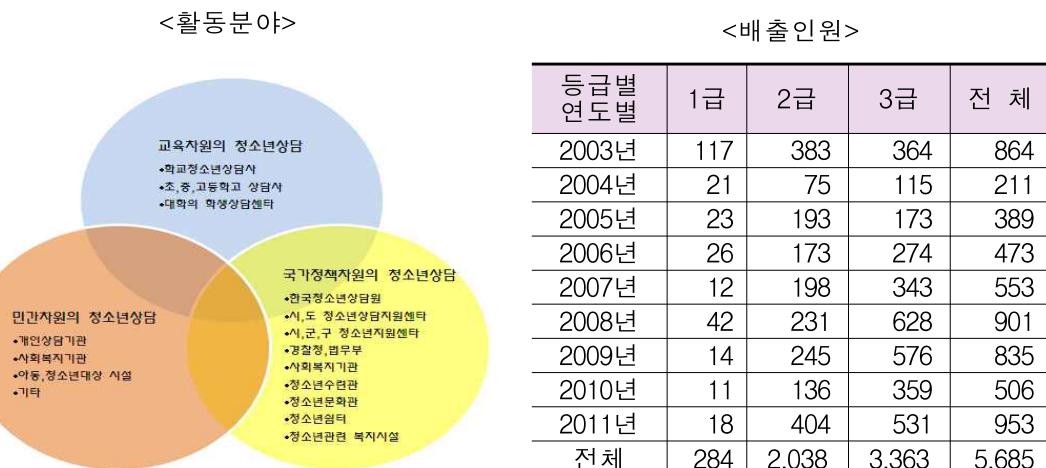
(출처: 한국경제TV 2012.3.15 "한미 FTA, 부동산 정책 전환점")

29 청소년상담사

□ 청소년상담사

- 청소년 상담관련 분야의 상담실무경력 및 기타자격을 갖춘 자로서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연수 100시간(연수비 260,000원)을 이수한 자에게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1·2·3급으로 구분(2003년 신설)

□ 활동분야 및 배출인원



<활동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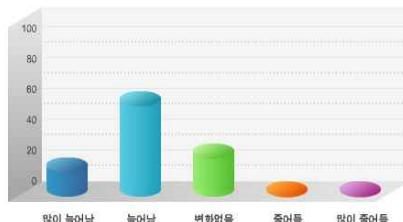


<배출인원>

□ 취업 전망

- 취업상태에서 자격증 취득이 약 60%이고 자격취득 후 취업은 31.3%임
- 취업기관은 아동·청소년상담센터(22.3%), 초·중·고(14.8%), 청소년단체·시설(8.3%) 순서임<한국청소년상담원>
- 표와 같이 향후 5년간 상담전문가의 고용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

일자리 전망



많이 늘어남 (16%) 늘어남 (59%) 변화없음 (25%) 줄어듬 (0%) 많이 줄어듬 (0%)
<한국고용정보원>

□ 응시추이

- 2003년도에 신설되어 계속 증가 추세

(단위 : 연도, 명)

| 구 분 | 2003~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
| 수험인원 | 15,477 | 4,154 | 5,737 | 5,953 | 6,563 |

□ 특이사항

- 응시자격이 1,2,3급 각각 심리·상담분야 박사, 석사, 학사 소지자로 기준이 높고 합격 후 100시간의 연수 필요<연수기관 :한국청소년상담원>
- 청소년상담사자격이 생기기 전부터 있던 “임상심리사” 등 학회 자격을 민간부문에서는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 동향분석 결과

- 점점 더 다양하고 심각해지는 청소년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청소년상담사자격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으며, 청소년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육성을 담당하는 청소년상담사를 배치도록 되어 있어 수험인원도 증가하는 추세임
- 응시자격 기준이 높고 연수시간 및 연수비용이 많이 소요될 뿐아니라 민간부문에서는 아직까지 학회자격을 더 선호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30 청소년지도사

□ 청소년지도사



- ▶ 청소년지도사는 국가공인 자격으로서, 1993년부터 청소년기본법에 의거 자격검정 시험과 이수과정을 통한 청소년지도사 양성
- ▶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하고 청소년지도사 연수 30시간을 이수한 자에게 동 자격 부여하고 있으며, 청소년수련시설 및 청소년단체 등에서 청소년 활동·복지·보호와 관련된 업무 담당

□ 청소년지도사의 필요성

-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체계적인 청소년활동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수련활동에 대한 전문지식과 지도기법 및 자질을 갖춘 청소년 지도자의 양성이 필요

□ 활동분야 및 수행직무



<활동분야>

- ▶ 청소년육성과 관련된 기관, 단체, 시설 등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으며 특히 생활권 수련시설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자연권수련시설인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등에 진출할 수 있음

<수행 직무>

- 국가 청소년육성에 적합한 정책의제를 개발하고 현장에 적용
- 청소년의 사회적응능력 개발과 건전여가활용에 필요한 각종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
- 청소년들의 특기적성교육 및 재량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도업무를 지원
- 청소년의 생활적응과 사회적 고민해소를 위해 상담하고 보호하는 활동을 수행
- 청소년의 봉사·문화·수련활동의 인증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도
- 위험 및 소외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 체험학습활동, 신체단련활동 등을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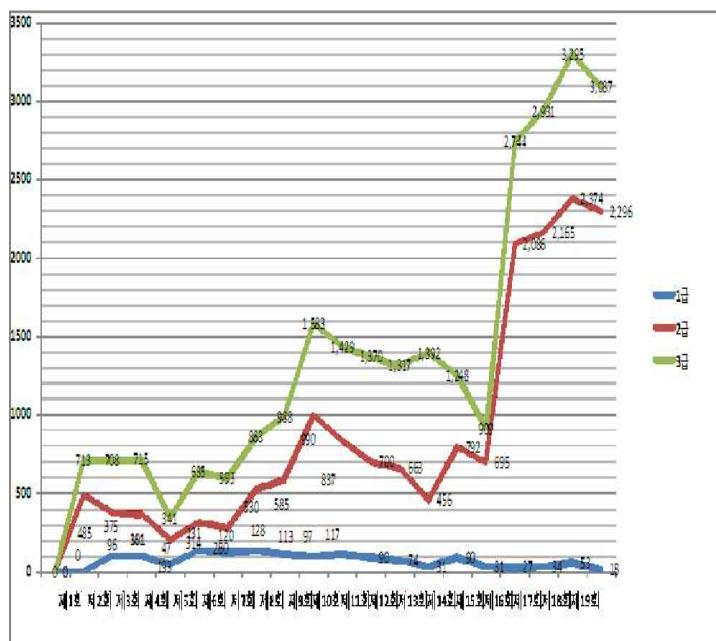
□ 배출인원

<배출인원>

| 등급별 연도별 | 1급 | 2급 | 3급 | 전체 |
|------------|-------|--------|--------|--------|
| 1회 | 0 | 485 | 713 | 1,198 |
| 2회 | 96 | 375 | 708 | 1,179 |
| 3회 | 101 | 361 | 715 | 1,177 |
| 4회 | 47 | 193 | 341 | 581 |
| 5회 | 131 | 314 | 635 | 1,080 |
| 6회 | 120 | 280 | 593 | 993 |
| 7회 | 128 | 530 | 863 | 1,521 |
| 8회 | 113 | 585 | 988 | 1,686 |
| 9회 | 97 | 990 | 1,583 | 2,670 |
| 10회 | 117 | 837 | 1,429 | 2,383 |
| 11회 | 90 | 700 | 1,370 | 2,160 |
| 12회 | 74 | 663 | 1,317 | 2,054 |
| 13회 | 31 | 456 | 1,392 | 1,879 |
| 14회 | 90 | 792 | 1,248 | 2,130 |
| 15회 | 31 | 695 | 909 | 1,635 |
| 16회 | 27 | 2,086 | 2,744 | 4,857 |
| 17회 | 34 | 2,165 | 2,931 | 5,130 |
| 18회 | 53 | 2,374 | 3,295 | 5,722 |
| 19회 | 18 | 2,296 | 3,087 | 5,401 |
| 전체 | 1,398 | 17,177 | 26,861 | 45,436 |

※ 1993년부터 시행

<배출현황>



□ 취업 전망

- 표와 같이 향후 5년간 청소년지도사의 고용은 다소 증가할 것이다
- 핵가족의 심화, 급격한 사회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청소년들로 인해 청소년 문제가 증가하고 있고 획일화된 공교육에서 얻을 수 없는 청소년 활동을 지도
- 1993년부터 2011년까지 1급 청소년지도사 1,398명, 2급 청소년지도사 17,177명, 3급 청소년지도사 26,861명 등 총 45,436명 국가공인청소년지도사를 배출하여 전문기관에 취업

<청소년지도사 일자리 전망>



많이늘어남 (7%) 늘어남 (63%) 변화없음 (17%) 줄어듬 (13%) 많이줄어듬 (0%)

<출처:한국고용정보원>

□ 응시추이

- 2005년 개정법령에 기초, 2008년부터 자격관련 전공과목 이수자들에 대한 필기시험에 면제됨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양성 및 검정 과정과 관련 하여 계속 증가 추세

(단위 : 연도, 명)

| 구 분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
| 수험인원 | 4,321 | 5,825 | 5,684 | 6,512 | 2·3급종목은 필기시험 과목면제자 증가예상 |

□ 특이사항

- 응시자격이 대학졸업(예정)자 및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전공 과목으로 이수, 일정기간의 실무경력이 요구되며, 합격 후 30시간의 연수 필요<연수기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동향분석 결과

- 비행, 범죄, 학교폭력 등 점점 더 다양하고 심각해지는 청소년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청소지도사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으며, 청소년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는 청소년 육성을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사를 배치도록 되어 있고, 최근 비행 청소년, 청소년범죄 학교폭력이 심화되어 자격증 취득 및 일부 대학 관련학과 신설 추세
- 상담 전문가 및 청소년 지도사는 향후 10년간 연 평균 3.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동 직업의 취업자 수 증가는 (1) 전문상담순회교사의 배치 및 임용 등 학교 상담의 활성화, (2)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상담 서비스 수요 증가, (3) 사회의 급속한 변화로 인해 늘어나고 있는 각종 사회문제와 스트레스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고용정보원, 직업별 인력수요 전망, 2010. 12>

31 한국어교육능력검정

□ 한국어교육능력검정

-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은 국어기본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려는 자에게 자격을 부여하고자 시행하는 시험임

□ 한국어교육능력검정 연혁

2005년도 국어기본법 시행령 개정

• 한국어교육능력검정 실시의 법적 근거 마련

2006년도 제1회 ~ 제3회

• 한국어세계화재단에서 시행

2009년도 제4회 ~ 현재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 (문화체육부장관 고시)

□ 한국어교육능력검정과 한국어교원자격

- 한국어교육능력검정은 한국어교원자격 3급 취득을 위해 거치는 시험임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 1항(일부 발췌)

3. 한국어교원 3급

- 나.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충족하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후 제14조에 따른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사람

○ 한국어교원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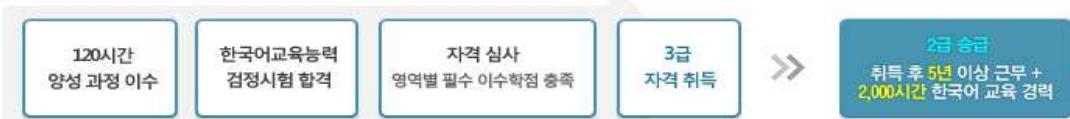
- 2005년도부터 문화체육부장관이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려는 자에게 부여하는 자격

○ 한국어교원자격 등급 및 취득 방법

- 학위과정(대학 · 대학원)을 통한 자격 취득



- 비학위과정(양성과정)을 통한 자격 취득



※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 후, 본 시험에 합격하면 한국어교원자격심사를 받을 수 있음

- 한국어교원자격 부여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국립국어원 주관)

○ 한국어교원자격 심사 현황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1. 12월 기준)

| 연도 | 신청자 | 합격자 | | | | 소계 |
|------|--------------|-----|-------|-------|--------------|----|
| | | 1급 | 2급 | 3급 | | |
| 2006 | 1,750 | - | 269 | 599 | 868 | |
| 2007 | 790 | - | 185 | 454 | 639 | |
| 2008 | 911 | - | 341 | 501 | 842 | |
| 2009 | 1,092 | - | 613 | 424 | 1,037 | |
| 2010 | 2,248 | - | 826 | 1,331 | 2,157 | |
| 2011 | 1,376 | 65 | 1,086 | 134 | 1,285 | |
| 계 | 8,167 | 65 | 3,320 | 3,443 | 6,828 | |

□ 취업현황 및 전망(한국어교원자격을 중심으로)

○ 국내에서는 다문화가정 구성, 국적취득 등 이주민이 늘어남에 따라 한국어교육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이주민의 기관·단체를 통한 한국어교육 경험이 2008년 26.5% → 2010년 55.2%로 증가

(출처 : 2010 이주민문화향수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 국내소재 한국어교육기관은 현재 약 173곳 (출처: 한국어세계화재단)

- 국외에서도 EPS-TOPIK 준비, 한국어 및 한국문화에 관한 관심 증가 등으로 인해 각지에 한국어교육과정 또는 기관이 개설되고 있어 이에 따른 한국어 강사 수요가 높은 편임

※ 문화체육부에서 지원하는 “세종학당”은 14개소(2009년도) → 31개국 61개소 (2011년도) → 34개국 72곳(2012년도 현재)으로 증가 중 (출처 : 한국어세계화재단)

□ 응시추이

- 2006년 첫 시행 이후 꾸준하게 응시인원이 증가하고 있음



(2011년도 12월 기준, 출처 : 한국어세계화재단/한국산업인력공단)

□ 특이사항

- 혼동하기 쉬운 한국어 능력 관련 시험

| | 평가 내용 | 주 응시대상 | 시행기관 |
|----------------------------|-------------------------------------|--|--|
| 한국어교육능력검정 | 한국어를 재외동포·외국인에게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의 평가 | 한국어교원자격3급 취득 희망자 | 한국산업인력공단 |
| 한국어능력시험 (TOPIK) |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재외동포·외국인의 한국어 사용 능력 평가 | 재외동포 및 외국인으로서 - 한국어 학습자 및 국내 대학 유학 희망자 - 국내·외 한국 기업체 및 공공기관 취업 희망자 - 고용허가제를 통한 한국 입국 희망자(EPS-TOPIK) | 국립국제교육원(S-TOPIK)/ 한국산업인력공단(EPS-TOPIK) |
| 국어능력인정시험 (TOKL) | 한국어가 모국어인 자의 종합적인 한국어 사용 능력 평가 | 한국어 사용능력을 평가 받고자 하는 자 - 취업준비, 진학 등 | 한국언어문화연구원 |

□ 동향분석 결과

- 국내 이주민 증가, 한국어 및 한국문화 확산 등의 요인으로 한국어교원자격 취득 희망자는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임
- 이에 따라, 한국어교육 관련 학위를 소지하지 않은 자가 자격 취득을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동 시험 역시 지속적인 수요증가 예상